



익산시 시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행자 : 익산시장
발행처 : 홍보담당관

선 람	기 관 의 장

【 조 례 】

- 익산시 조례 제1161호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
- 익산시 조례 제1162호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13
- 익산시 조례 제1163호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익산시 조례 제116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31
- 익산시 조례 제1165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34
- 익산시 조례 제1166호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 익산시 조례 제1167호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38
- 익산시 조례 제1168호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 익산시 조례 제1169호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51
- 익산시 조례 제1170호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 익산시 조례 제1171호 익산시 올림피아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57
- 익산시 조례 제1172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71
- 익산시 조례 제1173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77
- 익산시 조례 제1174호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 규 칙 】

- 익산시 규칙 제540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칙 81
- 익산시 규칙 제541호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88
- 익산시 규칙 제54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1
- 익산시 규칙 제543호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7

【 훈 령 】

- 익산시 훈령 제348호 익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109
- 익산시 훈령 제349호 익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명칭 및 직급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 130

【 고 시 】

- 익산시 고시 제2011-52호 익산시 목천포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133
- 익산시 고시 제2011-53호 익산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부송동) 고시 139

【 입 법 예 고 】

- 익산시 공고 제2011-1165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2
- 익산시 공고 제2011-1166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45

【 공 고 】

-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1-2호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공고 149

회 람								
--------	--	--	--	--	--	--	--	--

익산시 조례 제1161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뇨(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7. “특수지역”이란 익산시가 “익산시 건축허가 제한고시” 한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구덕리 지역을 말한다.
8. “농가저류조”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한다.

제4조(수집·운반 지역 및 대상) 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상 지역은 익산시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특수지역 내 가축분뇨
2. 처리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시장이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 ④ 제3항의 경우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의 방지를 위하여 제1호의 특수지역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처리하고,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의 여유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지역과 관외지역 순으로 반입·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농가저류조의 설치) ① 시장은 축산농가에게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농가저류조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가저류조를 설치하는 특수지역의 축산농가에게는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 보유차량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의 예외로 한다.

-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제6조에 따른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없을 경우

제8조(수집·운반비 등의 지원) 시장은 특수지역의 건축제한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 개선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운반 차량 또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
2. 그 밖에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0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운반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을 적용 받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가축분뇨 인계·인수증을 작성하고 사용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분뇨 수거 현황 일계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를 공공처리시설 운영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하였을 때는 포탈한 금액의 2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5조(보고·검사) ①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공공처리시설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관련 장부 등의 열람 또는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부과기준	계	수집·운반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특 수 지 역	허가대상	1ℓ	8	6	2
	신고대상		7.5	6	1.5
	규제미만		6	6	-
일 반 지 역	허가대상	1ℓ	18	8	10
	신고대상		17	8	9
	규제미만		8	8	-
관 외 지 역	허가대상	1ℓ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명시한 사용료 (19.869원/ x 물가상승율)		
	신고대상				
	규제미만				

비고) 1. 요금계산 합계액의 10원 미만은 버린다.

2. 기타 가축분뇨 외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 및 분뇨 등은 관외지역 사용료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

1. 건 명:익산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2. 계약대행자

- “갑” : 익산시장
- “을” :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있어 익산시장을 "갑" 이라 하고
대행을 위하여

()을 "을" 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익산시 가축분
뇨 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
을” 이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으로 하며 수집·운반구역은 익산시 29개 읍·면·동으로 한다.

제3조(의무) ①"을"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지연으로 축산농가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을"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다.

③"을"은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관리) ①"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
정한다.

②"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정상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①"을"은 수집·운반 수
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금

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한 다음달 10일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금지사항) "을"은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승계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시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

②"을"은 대행업의 지정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갑"에게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갑"이 제7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 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대행시기등) ①본 계약에 의한 대행업무는 년 월 일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익 산 시 장 (인)

을 : 상 호 :

성 명(대표자): (인)

주 소: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지정서			
① 상호(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 번호	-	
④ 주 소	(전화번호:)			
⑤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 (사무실면적 : m ²)			
⑥대행업개요	익산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⑦장비 및 인력보유	흡인식 차량 대(톤 대, 톤 대) 인력 확보 명(운전원 명)			
⑧지정조건	-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내용을 준수할 것			
<p>「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지정서를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익 산 시 장</p>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 인수·인계증 (제11조제2항 관련)

(대행업자 및 자가수집자 보관용)

(처리시설 보관용)

(배출자 보관용)

No _____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배출자	주소		
	성명		
수거량			
구분	계	운반수수료	처리비
금액			
수거일시			
차량번호			
위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			
대행자 : (인)			
			검인

No _____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배출자	주소		
	성명		
수거량			
구분	계	운반수수료	처리비
금액			
수거일시			
차량번호			
위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			
대행자 : (인)			
			검인

No _____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배출자	주소		
	성명		
수거량			
구분	계	운반수수료	처리비
금액			
수거일시			
차량번호			
위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			
대행자 : (인)			
			검인

- 비 고 : 1. 용지규격은 270mm X 190mm로 한다.
2. 1권은 100매로 한다.

가축분뇨 인계증

호외 / 2011년 7월 8일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수거 현황 일계표 (제11조제3항 관련)

- 업체명 :
○ 수거일자 : . . . (요일)

구분	수거농가 현황			수거량 (ℓ)	수거요금(원)			전화번호	비고
	농가명	대표자	주소		계	수수료	사용료		

익산시 조례 제1162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해당 연도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

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의원 2명
3. 시의 사업관련 국·소·단장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민간제안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운영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위원회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

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익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 실시협약과 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7.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8.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최초제안자의 이익침해방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심의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 또는 계류중인 안건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이관하여 심의한다.
-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중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익산시 조례 제1163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49조제1항”을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다음연도 예산편성전”을 “예산의결전”으로 하고, “편성”을 “의결”로 한다.

제18조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1조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제6의2호”를 “제2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를 “제7조, 제7조의 2”로 하고, 같은 호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28조제4항제6호 중 “50명”을 “30명”으로 하고,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3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기업
- 3)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제조업 중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제32조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사업(「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제32조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6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3조제4항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2호까지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및 **제5항**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제7조”를 “제7조, 제7조의2, 및”으로 하고,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한다.

제40조제4호 단서 중 “제49조제1항”을 “제57조”로 한다.

제41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p> <p>① (생략)</p> <p>1.~2. (생략)</p> <p>3. <u>행정·보존재산</u>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p> <p>4. <u>잡종재산</u>의 용도변경</p> <p>5.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p> <p>3. (생략)</p> <p>4. 다음 각목의 <u>행정재산·보존재산</u>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가.~나. (생략)</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p> <p>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u>행정재산</u> -----</p> <p>-----</p> <p>4. <u>일반재산</u> -----</p> <p>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제57조</u> -----</p> <p>-----</p> <p>3. (현행과 같음)</p> <p>4. ----- <u>행정재산</u> -</p> <p>-----</p> <p>가.~나. (현행과 같음)</p>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u>다음연도 예산편성전</u>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p> <p>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p>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p> <p>-----</p> <p>----- <u>예산의결전</u></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 (생략)</p>	<p>----- ----- <u>의결</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u>행정재산·보존재산</u>의 유지·보수 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 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8조(관리 및 처분) ----- ----- <u>행정재산</u> ----- ----- -----</p>
<p>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u>행정재</u> <u>산·보존재산</u>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② <u>행정재산·보존재산</u>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 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2. (생략)</p>	<p>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u>행정재</u> <u>산</u> ----- ----- ----- -----</p> <p>② <u>행정재산</u> ----- ----- -----</p> <p>1.~2. (현행과 같음)</p>
<p>제20조(사용·수익허가) <u>행정재산·보존재산</u>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1.~7. (생략)</p>	<p>제20조(사용·수익허가) <u>행정재산</u>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 관리관은 반드시 <u>행정·보존재산</u>의 사용·</p>	<p>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 ----- <u>행정재산</u> -----</p>

현행	개정안
<p>수익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 -----.</p>
<p>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행정·보존재산</u>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행정·보존재산</u>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u>행정·보존재산</u>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행정·보존재산</u>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p> <p>----- --- <u>행정재산</u> ----- ----- ----- ----- -----.</p> <p>②----- <u>행정재산</u> ----- ----- ----- <u>행정재산</u> ----- ----- -----.</p> <p>③----- <u>행정재산</u> ----- ----- ----- ----- ----- -----.</p>

현 행	개 정 안
<p>④ (생략)</p> <p>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u>행정·보존재산</u>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u>행정재산</u> ----- ----- -----.</p>
<p>⑥ (생략)</p> <p>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p>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 -----.</p>
<p>제24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의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p>	<p>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 ----- ----- ----- -----.</p>
<p>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 <u>제2조제1항제7호</u> ----- ----- -----.</p>

현 행	개 정 안
<p>1. (생략)</p> <p>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u>지방 산업단지</u>,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p> <p>3.~6.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 제7조, 제7조의2 -----<u>일반 산업단지</u>----- -----</p> <p>3.~6. (현행과 같음)</p>
<p>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③ (생략)</p> <p>④ (생략)</p> <p>1.~5. (생략)</p> <p>6.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u>50퍼센트</u> 이상을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p>	<p>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30명</u> ----- -- <u>30퍼센트</u> ----- ----- -----</p>
<p>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생략)</p> <p>1. (생략)</p> <p>가. 「<u>외국인투자촉진법</u>」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u>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u></p>	<p>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u>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u>」 제19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p> <p>1) 「<u>외국인투자 촉진법</u>」 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u>외국인투자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u></p>



현행	개정안
<p>나.~사. (생략)</p> <p>2. (생략)</p> <p>가~바. (생략)</p> <p><u><신설></u></p>	<p>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기업</p> <p>3)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제조업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 한다.)</p> <p>나.~사.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바. (현행과 같음)</p> <p>사.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사업(「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p>

현행	개정안
<p>3. (생략) 가.~사. (생략) 〈<u>신설</u>〉</p> <p>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u>시 재무회계규칙</u>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② (생략)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생략) 3. (생략) ③ (생략)</p> <p>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잡종재산</u>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u>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u></p> <p>3. (현행과 같음) 가.~사. (현행과 같음) 아. 「<u>외국인투자 촉진법</u>」 제13조제6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u>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u>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p> <p>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u>익산시 재무회계 규칙</u>」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u>일반재산</u> ----- ----- ----- ----- -----.</p>



현행	개정안
<p>1.~4. (생략)</p> <p>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u>잡종재산</u>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잡종재산</u>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4.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 ----- -----</p> <p style="text-align: right;"><u>일반재산</u></p> <p>③----- <u>일반재산</u> ----- ----- ----- ----- ----- ----- -----</p>
<p>1.~4. (생략)</p> <p>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u>잡종재산</u>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잡종재산</u>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4. (현행과 같음)</p> <p>④----- ----- <u>일반재산</u> ----- ----- ----- ----- ----- ----- ----- ----- ----- ----- ----- -----</p> <p>⑤----- ----- <u>일반</u> <u>재산</u> ----- ----- ----- ----- ----- -----</p>

현행	개정안
<p>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 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p> <p>5. (생략)</p>	<p>----- ----- 제57조 ----- ----- ----- ----- -----</p> <p>5. (현행과 같음)</p>
<p>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u>잡종재산을 신탁하는</u>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 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p>제41조(신탁의 종류) ----- ----- <u>일반재산</u> ----- ----- ----- -----</p>
<p>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p> <p>① (생략)</p> <p>1. <u>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u></p> <p>2. (생략)</p> <p>3. (생략)</p> <p>4. (생략)</p> <p>② (생략)</p>	<p>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p> <p>①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1. (현행 제2호와 같음)</p> <p>2. (현행 제3호와 같음)</p> <p>3.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익산시 조례 제1164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을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
친화담당관”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여성친화정책과” 를 “여성청소년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3호 “여성친화적 도시관련 업무 및 여성단체 관리” 를 “여성
단체 지원”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친화정책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② 「익산시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여성친화정책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③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여성친화정책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④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여성친화정책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⑤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여성친화정책과장”을 “여성친화담당관”으로 한다.

⑥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여성친화정책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⑦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선임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⑧ 「익산시 쌀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농림환경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 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u>홍보담당관</u>, <u>감사담당관</u>을 둔다.</p>	<p>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 기관의 설치) ----- <u>홍보담당관</u>, <u>감사담당관</u>, <u>여성친화담당관</u>----</p>
<p>제7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 주민 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u>여성친화정책과</u>, 종합민원과, 체육진흥과를 둔다.</p> <p>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2. (생략)</p> <p>13. <u>여성친화적 도시관련 업무 및 여성단체 관리</u></p>	<p>제7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 ---- -----</p> <p>--- <u>여성청소년과</u> ----- -----.</p> <p>② ----- -----.</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u>여성단체 지원</u></p>



익산시 조례 제1165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5급란 본청 “27” 을
“28” 로 하고, 사업소 “9”를 “8”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	사업소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	사업소	--
총계	1,395					총계	--				
--						--					
일반직 계	1,090					일반직 계	--				
--						--					
5급	76	<u>27</u>		<u>9</u>		5급	--	<u>28</u>		<u>8</u>	
--						--					

익산시 조례 제1166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예산편성관리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p> <p>1. ~ 11. (생략)</p> <p><u><신설></u></p>	<p>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p> <p>-----</p> <p>---</p> <p>1. ~ 11. (현행과 같음)</p> <p><u>12. 예산편성관리원</u></p>

익산시 조례 제1167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함열읍 와리 분리명란중 신성2 다음에 함열휴먼시아 1, 함열휴먼
 시아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면동	리명	분리명	반 명(관 할 구 역)
함열읍	와	함열휴 먼시아 1	1반 (와리 1539 함열휴먼시아 101동 101호~1506호)
			2반 (와리 1539 함열휴먼시아 102동 101호~1508호)
		함열휴 먼시아 2	1반 (와리 1539 함열휴먼시아 103동 101호~1508호)
			2반 (와리 1539 함열휴먼시아 104동 101호~1506호)
			3반 (와리 1539 함열휴먼시아 105동 101호~1508호)

동산동 1통 반란 중 7반을 삭제하고, 46통 반란 중 5반을 신설하며, 통리란 중 55통 다음에 56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면동	통리	반	관할 구역
동산동	1	7	<삭 제>
	46	5	동산동 138 라인아파트103동. 상가
	56	1	동산동 1142 세경4차아파트 401동 101호 ~ 215호
		2	동산동 1142 세경4차아파트 401동 301호 ~ 415호
		3	동산동 1142 세경4차아파트 401동 501호 ~ 615호
4		동산동 1142 세경4차아파트 401동 701호 ~ 815호	

모현동 통리란 중 49통 다음에 50통, 51통, 52통, 53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면동	통리	반	관할 구역
모현동	50	1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01동 101호 ~ 1806호
		2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02동 101호 ~ 1806호
		3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09동 101호 ~ 1907호
	51	1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03동 103호 ~ 1806호
		2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04동 101호 ~ 1706호
		3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05동 101호 ~ 1907호
	52	1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06동 101호 ~ 1506호
		2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07동 101호 ~ 1907호
		3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08동 101호 ~ 1506호
	53	1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10동 101호 ~ 1506호
		2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11동 101호 ~ 1907호
		3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12동 101호 ~ 1506호

영등2동 22통 반란 중 3반과 4반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5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23통 반란 중 1반부터 4반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5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3통 다음에 24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면동	통.리	반	관 할 구 역
영등2동	22	3	영등동 839-1~2, 840-1~2, 841-1~14
		4	영등동 842-1~14
		5	영등동 843-1~16, 844-1~8, 845-1~8
	23	1	영등동 801-1~16
		2	영등동 802-1~14
		3	영등동 803-1~10
		4	영등동 804-1~10
		5	영등동 805-1~10
	24	1	영등동 807-1~10
		2	영등동 807-11~14, 808-1~4
		3	영등동 808-5~14, 811-1~2, 812, 813, 814
		4	영등동 806-1~15
		5	영등동 809-1~13

별표 2 중 통.분리수란 및 통.리장수란의 “1,094”를 각각 “1,102”으로 하고, 반수란의 “3,186”을 “3,214”로 하며, 함열읍란, 동산동란, 모현동란, 영등2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동	법정동.리수	통.분리수	통.리장수	반수	비고
함 열 읍	6	51	51	83	
동 산 동	3	56	56	285	
모 현 동	1	53	53	255	
영 등 2 동	1	24	24	1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익산시 읍.면.동 통.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 관련]				[별표 1] 익산시 읍.면.동 통.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 관련]			
읍면명	리명	분리명	반 명(관할구역)	읍면명	리명	분리명	반 명(관할구역)
합열읍	와	삼양 ~ 신성2	(생 략)	합열읍	와	삼양~ 신성 2	(현행과 같음)
		<신설>				합열 휴먼 시아 1	1반 (와리 1539 합열휴먼시아 101동 101호~1506호)
						합열 휴먼 시아 2	2반 (와리 1539 합열휴먼시아 102동 101호~1508호)
						합열 휴먼 시아 2	1반 (와리 1539 합열휴먼시아 103동 101호~1508호)
		합열 휴먼 시아 2	2반 (와리 1539 합열휴먼시아 104동 101호~1506호)				
		합열 휴먼 시아 2	3반 (와리 1539 합열휴먼시아 105동 101호~1508호)				
		신성동 ~ 정동	(생 략)			신성동 ~ 정동	(현행과 같음)
		남당 ~ 다송	(생 략)			남당 ~ 다송	(현행과 같음)
오산면 용동면			(생 략)	오산면 용동면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읍면동	통·리	반	관할 구역	읍면동	통·리	반	관할 구역
중앙동 인화동			(생략)	중앙동 인화동			(현행과 같음)
동산동	1	1~6	(생략)	동산동	1	1~6	(현행과 같음)
		7	동산동138 동산동라인 아파트103동. 상가				(삭제)
	2~45	(생략)	2~45		(현행과 같음)		
	46	1~4	(생략)		46	1~4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5	동산동138 라인아파트103동. 상가
46~55	(생략)	46~55	(현행과 같음)				
<신설>			56	1 동산동 1142 세경4차아파트 401동 101호 ~ 215호			
				2 동산동 1142 세경4차아파트 401동 301호 ~ 415호			
				3 동산동 1142 세경4차아파트 401동 501호 ~ 615호			
				4 동산동 1142 세경4차아파트 401동 701호 ~ 815호			
마동~ 남중동			(생략)	마동~ 남중동			(현행과 같음)
모현동	1~49		(생략)	모현동	1~49		(현행과 같음)
						50	1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01동 101호 ~ 1806호
							2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02동 101호 ~ 1806호
							3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09동 101호 ~ 1907호
						51	1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03동 103호 ~ 1806호
							2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04동 101호 ~ 1706호
							3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05동 101호 ~ 1907호
						52	1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06동 101호 ~ 1506호
							2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07동 101호 ~ 1907호
							3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08동 101호 ~ 1506호
						53	1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10동 101호 ~ 1506호
							2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11동 101호 ~ 1907호
							3 모현동2가 674번지 배산휴먼시아 4단지 412동 101호 ~ 1506호

현 행				개 정 안			
읍면동	통리	반	관 할 구 역	읍면동	통리	반	관 할 구 역
송학동 ~ 영등1동			(생 략)	송학동 ~ 영등1동			(현행과 같음)
영등2동	22	1~2	(생 략)	영등2동	22	1~2	(현행과 같음)
		3	<u>영등동 839-1~2, 840-1 2, 841-1~14, 842-1~14</u>			3	<u>영등동 839-1~2, 840-1~2, 841-1~14</u>
		4	<u>영등동 843-1~16, 844-1~8, 845-1~8</u>			4	<u>영등동 842-1~14</u>
		<신설>				5	<u>영등동 843-1~16, 844-1~8, 845-1~8</u>
	23	1	<u>영등동 801-1~16, 802-1~14</u>	영등2동	23	1	<u>영등동 801-1~16</u>
		2	<u>영등동 803-1~10, 804-1~10, 805-1~10</u>			2	<u>영등동 802-1~14</u>
		3	<u>영등동 807-1~14, 808-1~14, 811-1~2, 812, 813, 814</u>			3	<u>영등동 803-1~10</u>
		4	<u>영등동 806-1~15, 809-1~13</u>			4	<u>영등동 804-1~10</u>
		<신설>				5	<u>영등동 805-1~10</u>
	<신설>			영등2동	24	1	<u>영등동 807-1~10</u>
		2	<u>영등동 807-11~14, 808-1~4</u>				
		3	<u>영등동 808-5~14, 811-1~2, 812, 813, 814</u>				
		4	<u>영등동 806-1~15</u>				
		5	<u>영등동 809-1~13</u>				
어양동 ~ 삼성동			(생 략)	어양동 ~ 삼성동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익산시 읍.면.동의 통.리.반장정수 제3조 관련)						(별표 2) 익산시 읍.면.동의 통.리.반장 정수(제3조 관련)					
읍면동	법 정 동.리수	통.분 리 수	통.리 장 수	반 수	비고	읍면동	법 정 동.리수	통.분 리 수	통.리 장 수	반 수	비고
29	145	<u>1,094</u>	<u>1,094</u>	<u>3,186</u>		29	145	<u>1,102</u>	<u>1,102</u>	<u>3,214</u>	
함열읍	6	<u>49</u>	<u>49</u>	<u>78</u>		함열읍	6	<u>51</u>	<u>51</u>	<u>83</u>	
오산면 ~ (생략)						오산면 ~ (현행과 같음)					
인화동						인화동					
동산동	3	<u>55</u>	<u>55</u>	<u>281</u>		동산동	3	<u>56</u>	<u>56</u>	<u>285</u>	
마 동 ~ (생략)						마 동 ~ (현행과 같음)					
남중동						남중동					
모현동	1	<u>49</u>	<u>49</u>	<u>243</u>		모현동	1	<u>53</u>	<u>53</u>	<u>255</u>	
송학동 ~ (생략)						송학동 ~ (현행과 같음)					
영등1동						영등1동					
영등2동	1	<u>23</u>	<u>23</u>	<u>107</u>		영등2동	1	<u>24</u>	<u>24</u>	<u>114</u>	
어양동 ~ (생략)						어양동 ~ (현행과 같음)					
삼성동						삼성동					

익산시 조례 제1168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지원청 공무원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등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장 및 해당학교장”을 “교육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초·중등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기타 교육시설(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6조(위원회 구성)①~②(생략) ③ (생략) 1.~3.(생략) 4. <u>익산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청 공무원</u></p> <p>제12조(보조금의 신청 등)①<u>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한다.</u></p> <p>② (생략)</p> <p>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u>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에</u> 통지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 ② (생략)</p>	<p>제1조(목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p> <p>제6조(위원회 구성)①~②(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u>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지원청 공무원</u></p> <p>제12조(보조금의 신청 등)①<u>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등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 ----- ----- ----- <u>교육장</u> ----- -----</p> <p>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사업비 세부집행 내역을 첨부하여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익산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초·중등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p>																																																																																																																		
<p>[별지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교부 신청서</p>	<p>[별지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교부 신청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명 칭</td> <td colspan="3">대표자</td> </tr> <tr> <td>소재지</td> <td colspan="3"></td> </tr> <tr> <td>사업명</td> <td colspan="3"></td> </tr> <tr> <td>보조사업의 목적</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보조사업의 소요경비 (금액단위 : 천원)</td> </tr> <tr> <td rowspan="2">총사업비</td> <td>시비</td> <td colspan="2">자부담</td> </tr> <tr> <td>보조</td> <td>교육청</td> <td>학교</td> </tr> <tr> <td></td> <td></td> <td></td> <td>기 타</td> </tr> <tr> <td>보조사업의 기간</td> <td colspan="3"></td> </tr> <tr> <td>사업계획</td> <td colspan="3">붙임과 같음</td> </tr> <tr> <td colspan="4">익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학 교 명 :</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대 표 자 : (인)</td> </tr> <tr> <td colspan="4">익산시장 귀하</td> </tr> <tr> <td colspan="4">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td> </tr> </table>	명 칭	대표자			소재지				사업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금액단위 : 천원)				총사업비	시비	자부담		보조	교육청	학교				기 타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	붙임과 같음			익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대 표 자 :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td> <td colspan="3">-----</td> </tr> <tr> <td>-----</td> <td colspan="3"></td> </tr> <tr> <td>-----</td> <td colspan="3"></td> </tr> <tr> <td>-----</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2">-----</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교육지원청</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 colspan="3"></td> </tr> <tr> <td>-----</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4">-----</td> </tr> </table>	-----	-----			-----				-----				-----				-----				-----	-----	-----		-----	교육지원청	-----				-----	-----				-----	-----			-----				-----				-----			
명 칭	대표자																																																																																																																		
소재지																																																																																																																			
사업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금액단위 : 천원)																																																																																																																			
총사업비	시비	자부담																																																																																																																	
	보조	교육청	학교																																																																																																																
			기 타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	붙임과 같음																																																																																																																		
익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대 표 자 :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																																																																																																																		

-----	-----	-----																																																																																																																	
	-----	교육지원청	-----																																																																																																																

-----	-----																																																																																																																		



<p style="text-align: center;">현 행</p> <p>[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p> <p><input type="checkbox"/> 소요경비 확보계획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rowspan="2">총 사업비</th> <th colspan="4">소요재원 확보계획</th> </tr> <tr> <th>시보조금</th> <th colspan="2">자 부 담</th> <th></th> </tr> <tr> <td></td> <td></td> <td>소 계</td> <td>교육청</td> <td>학 교</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p><input type="checkbox"/> 사업추진계획</p> <p>○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구 분</th> <th>용 도</th> <th>금 액</th> <th>산 출 기 초</th> </tr> <tr> <td></td> <td>총 계</td> <td></td> <td></td> </tr> <tr> <td>시비보조금</td> <td>소 계</td> <td></td> <td></td> </tr> <tr> <td>교 육 청</td> <td>소 계</td> <td></td> <td></td> </tr> <tr> <td>학 교</td> <td>소 계</td> <td></td> <td></td> </tr> </table>	총 사업비	소요재원 확보계획				시보조금	자 부 담					소 계	교육청	학 교						구 분	용 도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시비보조금	소 계			교 육 청	소 계			학 교	소 계			<p style="text-align: center;">개 정 안</p> <p>[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p> <p><input type="checkbox"/> 소요경비 확보계획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50%;"></td> <td style="width:50%;"></td> </tr> </table> <p><input type="checkbox"/>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r> <tr>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r> <tr>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r> <tr>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r> <tr>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r> </table>																																														
총 사업비		소요재원 확보계획																																																																																				
	시보조금	자 부 담																																																																																				
		소 계	교육청	학 교																																																																																		
구 분	용 도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시비보조금	소 계																																																																																					
교 육 청	소 계																																																																																					
학 교	소 계																																																																																					
<p>[별지 제3호서식] 보 조 금 정 산 서</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학 교 명</td> <td>대 표 자</td> </tr> <tr> <td>소 재 지</td> <td>전 화 번 호</td> </tr> <tr> <td>보조사업명</td> <td></td> </tr> <tr> <td>사업기간</td> <td></td> </tr> <tr> <td colspan="2">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td> </tr> <tr> <td>총 사업비</td> <td>집 행 액</td> <td>집 행 잔 액</td> </tr> <tr> <td>시 보 조 금</td> <td>시 보 조 금</td> <td>시 보 조 금</td> </tr> <tr> <td>자 부 담</td> <td>자 부 담</td> <td>자 부 담</td> </tr> <tr> <td>교 육 청</td> <td>교 육 청</td> <td>교 육 청</td> </tr> <tr> <td>학 교</td> <td>학 교</td> <td>학 교</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사업성과 및 문제점</td> <td colspan="2"></td> </tr> <tr> <td>세부집행내역</td> <td colspan="2">"붙임참조"</td> </tr> <tr> <td colspan="3">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대 표 자 : (인) 익산시장 귀하 </td> </tr> </table>	학 교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보조사업명		사업기간		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시 보 조 금	시 보 조 금	시 보 조 금	자 부 담	자 부 담	자 부 담	교 육 청	교 육 청	교 육 청	학 교	학 교	학 교				사업성과 및 문제점			세부집행내역	"붙임참조"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대 표 자 : (인) 익산시장 귀하			<p>[별지 제3호서식] 보 조 금 정 산 서</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r> <tr>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r> <tr>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r> <tr>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r> <tr> <td colspan="4">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td> </tr> <tr>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r> <tr>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r> <tr>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r> <tr>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r> <tr>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r> <tr>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r> <tr>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d style="width:25%;"></td> </tr> </table>																	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																															
학 교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보조사업명																																																																																						
사업기간																																																																																						
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시 보 조 금	시 보 조 금	시 보 조 금																																																																																				
자 부 담	자 부 담	자 부 담																																																																																				
교 육 청	교 육 청	교 육 청																																																																																				
학 교	학 교	학 교																																																																																				
사업성과 및 문제점																																																																																						
세부집행내역	"붙임참조"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대 표 자 : (인) 익산시장 귀하																																																																																						
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	---	---	---	---	---	
총 계							---						
시보조 금							----						
자 부 담	교육 청												
	학 교						--						

익산시 조례 제1169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또는 민간인이 개최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축제”란 익산시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행사로서 시민 화합, 관광 및 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예술 또는 산업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축제의 육성)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축제의 종류) 이 조례에서의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익산서동축제 : 서동(백제 무왕)설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축제
2.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 시화인 국화를 통해 도시·농촌이 함께하는 농업관광축제
3. 익산주얼리엑스포 : 귀금속보석 특화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산업엑스포

4. 익산돌문화축제 : 석공예 전통문화계승과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축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익산시에서 주최 또는 지원하는 축제

제5조 (축제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소.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및 산업 등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제의 신설.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개최시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직위와 관련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경비 지원) 시장은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축제개최자에게 그 개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축제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 또는 지원하는 경우 익산시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우선적으로 위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축제추진위원회) ① 제14조에 의거 축제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는 축제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고 시에서 직접 추진 할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②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하여 축제 추진 부서별로 구성 운영한다.

제16조(평가) 시장은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익산서동축제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익산서동축제추진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익산시 조례 제1170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능)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1.~6. (생략)</p> <p><신 설></p> <p>7.(생략)</p>	<p>제2조(기능)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1.~6. (현행과 같음)</p> <p>7.「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p> <p>8.(현행 제7호와 같음)</p>

익산시 조례 제1171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19세이하인”을 “19세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0호 중 “20세이상인”을 “19세이상인”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관

- 가. 생활체육시설
- 나. 문화예술시설
- 다. 교양취미시설
- 라. 후생복지시설

2.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 가. 생활체육시설
- 나. 후생복지시설
- 다. 그 밖의 시설 : 다목적운동시설(코니그린구장)·유아실·로울
러스케이트장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민생활관의 운영 시설별 프로그램은 별표 4와 같이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을 “별표 1 및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이용료 할인대상 및 할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청소년, 군인, 어린이에 대한 할인비율 적용은 수영종목의 요금비율을 따른다.

1. 단일종목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계속 등록시 : 월 이용료 합계 금액의 100분의 10
2. 1명이 2종목 이상의 프로그램을 등록시 : 각 프로그램 월 이용료 합계 금액의 100분의 20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19세 미만의 자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별표 1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

구 분		이용시간	이용회수	월 이용료(일회이용료)
수영장	성 인	2시간	주6회이하	48,000원(2,900원)
	청소년·군인	2시간	주6회이하	38,000원(2,400원)
	어 린 이	2시간	주6회이하	29,000원(1,800원)
	유 아	2시간	주6회이하	9,000원(540원)
아쿠아로빅	성 인	2시간	주6회이하	48,000원
	청소년·군인	2시간	주6회이하	38,000원
	어 린 이	2시간	주6회이하	29,000원
헬 스		1시간	주5회이하	30,000원 (2,500원)
에어로빅		1시간	주5회이하	25,000원
댄스스포츠		1시간	주3회이하	30,000원
요 가		1시간	주5회이하	25,000원
발리댄스		1시간	주3회이하	30,000원
체육관	검 도	1시간	주5회이하	30,000원
	탁 구	1시간	주5회이하	30,000원 (2,500원)
	국선도,태권도	1시간	주5회이하	30,000원
노래교실		2시간	주2회이하	20,000원
기타	생활체육	1시간	주3회이하	30,000원
	문화예술 교양취미	2시간	주2회이하	30,000원

가. 회원이라 함은 1개월 이상 이용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이용시간은 1일 1회에 한한다.

나. 프로그램별로 회원은 20명내외로 한다. 다만, 회원이 10명 이내의 경우 폐지할 수 있다.

다. 종목이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기타 분야별 월 이용료를 적용한다.

5. 개인 사물함 사용료 : 보증금 10,000원, 월 사용료 3,000원

별표 3 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제3호 종목
별 이용료 및 수강료 구분 수영장란 및 아쿠아로빅란의 “어린이·경노”
를 각각 “어린이”로 하고, 댄스스포츠란 및 발리댄스란의 이용회수 “주
2회이하” 를 각 각 “주3회이하” 로 하며, 월 이용료 “22,000원” 을
각각 “25,000원” 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인 사물함 사용료 : 보증금 10,000원 월 사용료 3,000원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국민생활관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 [제3조 관련]

1. 본관

구 분	운영시설	프 로 그 램
생활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헬스실, 에어로빅실, 요가실, 검도실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검도, 요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발리댄스, 태보, 방송댄스, 라인댄스, 파워다이어트댄스, 힙합댄스, 재즈댄스, 나이트댄스, 살사댄스, 국선도, 태권도 등
문화예술시설	소극장	연극, 행사, 노래교실 등
교양취미시설	건강교실, 취미교실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난타, 가야금, 색소폰, 기타, 아코디언, 하모니카, 만도린, 오카리나 등
후생복지시설	매점, 휴게실	

2.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구 분	운영시설	프 로 그 램
생활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헬스실, 에어로빅실, 테니스장, 탁구장, 요가실, 다목적운동장, 로울러스케이팅장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요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발리댄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농구, 배구, 풋살, 족구, 로울러스케이팅 등
후생복지시설	매점, 휴게실, 식당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8. ----- 19세미만인 -----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성인”이라 함은 20세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10. ----- 19세이상인 ----- -----.
11. · 12. (생략)	11. · 12. (현행과 같음)
제3조(운영시설) 국민생활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운영 한다.	제3조(운영시설) ① ----- -----.
1. 본관	1. 본관
가. 생활체육시설 : 체육관·수영장·헬스실·에어로빅실·아쿠아로빅·요가	가. 생활체육시설
나. 문화예술시설 : 소극장(연극·행사 등)	나. 문화예술시설
다. 국민교양시설 : 유아스포츠단·건강교실·취미교실	다. 교양취미시설

현 행	개 정 안
<p><u>라. 후생복지시설 : 매점</u></p> <p><u>2. 별관 : 대극장(영화·연극·행사 등)</u></p> <p><u>3. 합열올림픽스포츠센터</u> <u>가. 생활체육시설: 체육관,수영장 헬스실,에어로빅실, 테니스장 탁구장,아쿠아로빅,요가</u> <u>나. 후생복지시설: 휴게실,식당 매점</u></p> <p><u>다. 그 밖의 시설:다목적운동 시설(코니그린구장)유아실 로울러스케이트장</u></p> <p><u><신 설></u></p> <p>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사용료 및 이용료는 “<u>별표1, 별표2 및 별표3</u>”에 의하여 징수 한다. <u><단서 신설></u></p> <p>② ~ ④ (생략)</p> <p>제10조의2(이용료 할인 및 할증) ① (생략) ② <u>이용료는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u></p>	<p><u>라. 후생복지시설</u></p> <p><u><삭 제></u></p> <p><u>2. 합열올림픽스포츠센터</u> <u>가. 생활체육시설</u></p> <p><u>나. 후생복지시설</u></p> <p><u>다. 그 밖의 시설:다목적운동 시설(코니그린구장)유아실 로울러스케이트장</u></p> <p>② <u>국민생활관의 운영 시설별 프로그램은 별표 4와 같이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u></p> <p>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 <u>별표 1 및 별표 3</u>----- ----- . 다만, 「<u>부가가치세법</u>」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2(이용료 할인 및 할증) ① (현행과 같음) ② <u>이용료 할인대상 및 할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청소년, 군인, 어린이에 대한 할인비율 적용은 수영종목의 요금비율을 따른다.</u></p>



현행	개정안
<p>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다만, 중복 할인은 받을 수 없고 가장 할인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할인 받을 수 있다.</p> <p>1. ~ 6. (생략)</p> <p><신설></p> <p><신설></p> <p>④·⑤ (생략)</p>	<p>1. 단일종목 프로그램을 3개월이상 계속 등록시: 월 이용료 합계 금액의 100분의 10</p> <p>2. 1명이 2종목 이상의 프로그램을 등록시: 각 프로그램 월 이용료 합계 금액의 100분의 20</p> <p>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19세 미만의 자</p> <p>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p> <p>④·⑤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 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 (본관) [8조제1항 관련] 1.~3. (생략) 4.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15%;">이용 시간</th> <th style="width: 15%;">이용회수</th> <th style="width: 15%;">월 이용료 (일회이용료)</th> </tr> </thead> <tbody> <tr><td>수영장</td><td>-----</td><td>----</td><td>-----</td></tr> <tr><td> 어린이·경노</td><td>-----</td><td>----</td><td>-----</td></tr> <tr><td>아쿠아로빅</td><td>-----</td><td>----</td><td>-----</td></tr> <tr><td> 어린이·경노</td><td>-----</td><td>----</td><td>-----</td></tr> <tr><td> -----</td><td>-----</td><td>----</td><td>-----</td></tr> <tr><td> -----</td><td>-----</td><td>----</td><td>-----</td></tr> <tr><td>댄스스포츠</td><td>1시간</td><td>주2회이하</td><td>25,000원</td></tr> <tr><td>요 가</td><td>1시간</td><td>주5회이하</td><td>25,000원</td></tr> <tr><td>발리댄스</td><td>1시간</td><td>주2회이하</td><td>25,000원</td></tr> <tr><td rowspan="4">체육관</td><td>검 도</td><td>1시간</td><td>주5회이하 30,000원</td></tr> <tr><td>탁 구</td><td>1시간</td><td>주5회이하 30,000원 (2,500원)</td></tr> <tr><td>배드민턴</td><td>1시간</td><td>주5회이하 30,000원 (2,500원)</td></tr> <tr><td>국선도</td><td>1시간</td><td>주5회이하 30,000원</td></tr> <tr><td>유아스포츠탄</td><td>5시간</td><td>주5회이하</td><td>90,000원</td></tr> <tr><td>〈신설〉</td><td>〈신설〉</td><td>〈신설〉</td><td>〈신설〉</td></tr> <tr><td rowspan="2">〈신설〉</td><td>〈신설〉</td><td>〈신설〉</td><td>〈신설〉</td></tr> <tr><td>〈신설〉</td><td>〈신설〉</td><td>〈신설〉</td></tr> </tbody> </table> <p>가.~나. (생략) 〈신설〉</p> <p>〈신설〉</p>	구 분	이용 시간	이용회수	월 이용료 (일회이용료)	수영장	-----	----	-----	어린이·경노	-----	----	-----	아쿠아로빅	-----	----	-----	어린이·경노	-----	----	-----	-----	-----	----	-----	-----	-----	----	-----	댄스스포츠	1시간	주2회이하	25,000원	요 가	1시간	주5회이하	25,000원	발리댄스	1시간	주2회이하	25,000원	체육관	검 도	1시간	주5회이하 30,000원	탁 구	1시간	주5회이하 30,000원 (2,500원)	배드민턴	1시간	주5회이하 30,000원 (2,500원)	국선도	1시간	주5회이하 30,000원	유아스포츠탄	5시간	주5회이하	90,000원	〈신설〉	<p>[별표 1] 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 (본관) [제8조제1항 관련] 1.~3. (현행과 같음) 4.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15%;">이용 시간</th> <th style="width: 15%;">이용회수</th> <th style="width: 15%;">월 이용료 (일회이용료)</th> </tr> </thead> <tbody> <tr><td>수영장</td><td>-----</td><td>----</td><td>-----</td></tr> <tr><td> 어린이</td><td>-----</td><td>----</td><td>-----</td></tr> <tr><td>아쿠아로빅</td><td>-----</td><td>----</td><td>-----</td></tr> <tr><td> 어린이</td><td>-----</td><td>----</td><td>-----</td></tr> <tr><td> -----</td><td>-----</td><td>----</td><td>-----</td></tr> <tr><td> -----</td><td>-----</td><td>----</td><td>-----</td></tr> <tr><td>댄스스포츠</td><td>-----</td><td>주3회이하</td><td>30,000원</td></tr> <tr><td>요 가</td><td>-----</td><td>-----</td><td>-----</td></tr> <tr><td>발리댄스</td><td>-----</td><td>주3회이하</td><td>30,000원</td></tr> <tr><td rowspan="4">체육관</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삭제〉</td><td>〈삭제〉</td><td>〈삭제〉</td><td>〈삭제〉</td></tr> <tr><td>국선도 태권도</td><td>-----</td><td>-----</td><td>-----</td></tr> <tr><td>〈삭제〉</td><td>〈삭제〉</td><td>〈삭제〉</td><td>〈삭제〉</td></tr> <tr><td>노래교실</td><td>2시간</td><td>주2회이하</td><td>20,000원</td></tr> <tr><td rowspan="2">기 타</td><td>생활체육</td><td>1시간</td><td>주3회이하 30,000원</td></tr> <tr><td>문화예술 교양취미</td><td>2시간</td><td>주2회이하 30,000원</td></tr> </tbody> </table> <p>가.~나. (현행과 같음) 다. 종목이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기타 분야별 월 이용료를 적용한다.</p> <p>5. 개인 사물함 사용료 : 보증금 10,000원, 월 사용료 3,000원</p>	구 분	이용 시간	이용회수	월 이용료 (일회이용료)	수영장	-----	----	-----	어린이	-----	----	-----	아쿠아로빅	-----	----	-----	어린이	-----	----	-----	-----	-----	----	-----	-----	-----	----	-----	댄스스포츠	-----	주3회이하	30,000원	요 가	-----	-----	-----	발리댄스	-----	주3회이하	30,000원	체육관	-----	----	-----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국선도 태권도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노래교실	2시간	주2회이하	20,000원	기 타	생활체육	1시간	주3회이하 30,000원	문화예술 교양취미	2시간	주2회이하 30,000원										
구 분	이용 시간	이용회수	월 이용료 (일회이용료)																																																																																																																																								
수영장	-----	----	-----																																																																																																																																								
어린이·경노	-----	----	-----																																																																																																																																								
아쿠아로빅	-----	----	-----																																																																																																																																								
어린이·경노	-----	----	-----																																																																																																																																								
-----	-----	----	-----																																																																																																																																								
-----	-----	----	-----																																																																																																																																								
댄스스포츠	1시간	주2회이하	25,000원																																																																																																																																								
요 가	1시간	주5회이하	25,000원																																																																																																																																								
발리댄스	1시간	주2회이하	25,000원																																																																																																																																								
체육관	검 도	1시간	주5회이하 30,000원																																																																																																																																								
	탁 구	1시간	주5회이하 30,000원 (2,500원)																																																																																																																																								
	배드민턴	1시간	주5회이하 30,000원 (2,500원)																																																																																																																																								
	국선도	1시간	주5회이하 30,000원																																																																																																																																								
유아스포츠탄	5시간	주5회이하	90,000원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구 분	이용 시간	이용회수	월 이용료 (일회이용료)																																																																																																																																								
수영장	-----	----	-----																																																																																																																																								
어린이	-----	----	-----																																																																																																																																								
아쿠아로빅	-----	----	-----																																																																																																																																								
어린이	-----	----	-----																																																																																																																																								
-----	-----	----	-----																																																																																																																																								
-----	-----	----	-----																																																																																																																																								
댄스스포츠	-----	주3회이하	30,000원																																																																																																																																								
요 가	-----	-----	-----																																																																																																																																								
발리댄스	-----	주3회이하	30,000원																																																																																																																																								
체육관	-----	----	-----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국선도 태권도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노래교실	2시간	주2회이하	20,000원																																																																																																																																								
기 타	생활체육	1시간	주3회이하 30,000원																																																																																																																																								
	문화예술 교양취미	2시간	주2회이하 30,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3] 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제8조제1항 관련]</p> <p>1.~ 2. (생략)</p> <p>3.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5%;">이용시간</th> <th style="width: 15%;">이용회수</th> <th style="width: 60%;">월 이용료 (일회이용료)</th> </tr> </thead> <tbody> <tr><td rowspan="4">수영장</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어린이·경노</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3">아쿠아로빅</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어린이·경노</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댄스스포츠</td><td>1시간</td><td>주2회 이하</td><td>22,000원</td></tr> <tr><td>요가</td><td>1시간</td><td>주5회 이하</td><td>22,000원</td></tr> <tr><td>발리댄스</td><td>1시간</td><td>주2회 이하</td><td>22,000원</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p>가.~나. (생략)</p> <p><신설></p>	구분	이용시간	이용회수	월 이용료 (일회이용료)	수영장	-----	-----	-----	-----	-----	-----	어린이·경노	-----	-----	-----	-----	-----	아쿠아로빅	-----	-----	-----	-----	-----	-----	어린이·경노	-----	-----	-----	-----	-----	-----	-----	-----	댄스스포츠	1시간	주2회 이하	22,000원	요가	1시간	주5회 이하	22,000원	발리댄스	1시간	주2회 이하	22,000원	-----	-----	-----	-----	-----	-----	-----	-----	-----	-----	-----	-----	-----	-----	-----	-----	<p>[별표 3] 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제8조제1항 관련]</p> <p>1.~2. (현행과 같음)</p> <p>3.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5%;">이용시간</th> <th style="width: 15%;">이용회수</th> <th style="width: 60%;">월 이용료 (일회이용료)</th> </tr> </thead> <tbody> <tr><td rowspan="4">수영장</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어린이</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3">아쿠아로빅</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어린이</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댄스스포츠</td><td>-----</td><td>주3회이하</td><td>25,000원</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발리댄스</td><td>-----</td><td>주3회이하</td><td>25,000원</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p>가.~나. (현행과 같음)</p> <p>4. 개인 사물함 사용료 : 보증금 10,000원, 월 사용료 3,000원</p>	구분	이용시간	이용회수	월 이용료 (일회이용료)	수영장	-----	-----	-----	-----	-----	-----	어린이	-----	-----	-----	-----	-----	아쿠아로빅	-----	-----	-----	-----	-----	-----	어린이	-----	-----	-----	-----	-----	-----	-----	-----	댄스스포츠	-----	주3회이하	25,000원	-----	-----	-----	-----	발리댄스	-----	주3회이하	25,000원	-----	-----	-----	-----	-----	-----	-----	-----	-----	-----	-----	-----
구분	이용시간	이용회수	월 이용료 (일회이용료)																																																																																																																				
수영장	-----	-----	-----																																																																																																																				
	-----	-----	-----																																																																																																																				
	어린이·경노	-----	-----																																																																																																																				
	-----	-----	-----																																																																																																																				
아쿠아로빅	-----	-----	-----																																																																																																																				
	-----	-----	-----																																																																																																																				
	어린이·경노	-----	-----																																																																																																																				
-----	-----	-----																																																																																																																					
-----	-----	-----																																																																																																																					
댄스스포츠	1시간	주2회 이하	22,000원																																																																																																																				
요가	1시간	주5회 이하	22,000원																																																																																																																				
발리댄스	1시간	주2회 이하	22,000원																																																																																																																				
-----	-----	-----	-----																																																																																																																				
-----	-----	-----	-----																																																																																																																				
-----	-----	-----	-----																																																																																																																				
-----	-----	-----	-----																																																																																																																				
구분	이용시간	이용회수	월 이용료 (일회이용료)																																																																																																																				
수영장	-----	-----	-----																																																																																																																				
	-----	-----	-----																																																																																																																				
	어린이	-----	-----																																																																																																																				
	-----	-----	-----																																																																																																																				
아쿠아로빅	-----	-----	-----																																																																																																																				
	-----	-----	-----																																																																																																																				
	어린이	-----	-----																																																																																																																				
-----	-----	-----																																																																																																																					
-----	-----	-----																																																																																																																					
댄스스포츠	-----	주3회이하	25,000원																																																																																																																				
-----	-----	-----	-----																																																																																																																				
발리댄스	-----	주3회이하	25,000원																																																																																																																				
-----	-----	-----	-----																																																																																																																				
-----	-----	-----	-----																																																																																																																				
-----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별표4란<신설></u>	<p>[별표 4] 국민생활관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 [제3조 관련]</p> <p>1. 본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운영시설</th> <th style="text-align: center;">프 로 그 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활체육시설</td> <td>체육관, 수영장, 헬스실, 에어로빅실, 요가실, 검도실</td> <td>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검도, 요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발리댄스, 태보, 방송댄스, 라인댄스, 파워다이어트댄스, 힙합댄스, 재즈댄스, 나이트댄스, 살사댄스, 국선도, 태권도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문화예술시설</td> <td>소극장</td> <td>연극, 행사, 노래교실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양취미시설</td> <td>건강교실, 취미교실</td> <td>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난타, 가야금, 색소폰, 기타, 아코디언, 하모니카, 만도린, 오카리나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후생복지시설</td> <td>매점, 휴게실</td> <td></td> </tr> </tbody> </table> <p>2.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운영시설</th> <th style="text-align: center;">프 로 그 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활체육시설</td> <td>체육관, 수영장, 헬스실, 에어로빅실, 테니스장, 탁구장, 요가실, 다목적운동장, 로울러스케이트장</td> <td>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요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발리댄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농구, 배구, 풋살, 족구, 로울러스케이트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후생복지시설</td> <td>매점, 휴게실, 식당</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운영시설	프 로 그 램	생활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헬스실, 에어로빅실, 요가실, 검도실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검도, 요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발리댄스, 태보, 방송댄스, 라인댄스, 파워다이어트댄스, 힙합댄스, 재즈댄스, 나이트댄스, 살사댄스, 국선도, 태권도 등	문화예술시설	소극장	연극, 행사, 노래교실 등	교양취미시설	건강교실, 취미교실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난타, 가야금, 색소폰, 기타, 아코디언, 하모니카, 만도린, 오카리나 등	후생복지시설	매점, 휴게실		구 분	운영시설	프 로 그 램	생활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헬스실, 에어로빅실, 테니스장, 탁구장, 요가실, 다목적운동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요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발리댄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농구, 배구, 풋살, 족구, 로울러스케이트 등	후생복지시설	매점, 휴게실, 식당	
구 분	운영시설	프 로 그 램																							
생활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헬스실, 에어로빅실, 요가실, 검도실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검도, 요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발리댄스, 태보, 방송댄스, 라인댄스, 파워다이어트댄스, 힙합댄스, 재즈댄스, 나이트댄스, 살사댄스, 국선도, 태권도 등																							
문화예술시설	소극장	연극, 행사, 노래교실 등																							
교양취미시설	건강교실, 취미교실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난타, 가야금, 색소폰, 기타, 아코디언, 하모니카, 만도린, 오카리나 등																							
후생복지시설	매점, 휴게실																								
구 분	운영시설	프 로 그 램																							
생활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헬스실, 에어로빅실, 테니스장, 탁구장, 요가실, 다목적운동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요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발리댄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농구, 배구, 풋살, 족구, 로울러스케이트 등																							
후생복지시설	매점, 휴게실, 식당																								

현행					개정안																																																																																																																																																																																																						
<p>[별표1] 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 (본관) [8조제1항 관련] 1.~3. (생략) 4.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p>					<p>[별표1] 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 (본관) [제8조제1항 관련] 1.~3. (현행과 같음) 4.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이용시간</th> <th>이용회수</th> <th>월이용료 (일회이용료)</th> <th></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수영장</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어린이경노</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아쿠아로빅</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어린이경노</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댄스스포츠</td> <td>1시간</td> <td>주2회 이하</td> <td>25,000원</td> <td></td> </tr> <tr> <td>요가</td> <td>1시간</td> <td>주5회 이하</td> <td>25,000원</td> <td></td> </tr> <tr> <td>발리댄스</td> <td>1시간</td> <td>주2회 이하</td> <td>25,000원</td> <td></td> </tr> <tr> <td rowspan="4">체육관</td> <td>검도</td> <td>1시간</td> <td>주5회 이하</td> <td>30,000원</td> </tr> <tr> <td>탁구</td> <td>1시간</td> <td>주5회 이하 (2,500원)</td> <td>30,000원 (2,500원)</td> </tr> <tr> <td>배드민턴</td> <td>1시간</td> <td>주5회 이하 (2,500원)</td> <td>30,000원 (2,500원)</td> </tr> <tr> <td>국선도</td> <td>1시간</td> <td>주5회 이하</td> <td>30,000원</td> </tr> <tr> <td>유아스포츠단</td> <td>5시간</td> <td>주5회 이하</td> <td>90,000원</td> <td></td> </tr> <tr> <td><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d></td> </tr> <tr> <td rowspan="2"><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r> <tr> <td><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r> <tr> <td colspan="5">가.~나. (생략) <신설></td> </tr> </tbody> </table>					구분	이용시간	이용회수	월이용료 (일회이용료)		수영장	-----	----	-----	-----	-----	----	-----	-----	어린이경노	-----	-----	-----	아쿠아로빅	-----	----	-----	-----	-----	----	-----	-----	어린이경노	-----	-----	-----	-----	----	-----	-----		-----	----	-----	-----		댄스스포츠	1시간	주2회 이하	25,000원		요가	1시간	주5회 이하	25,000원		발리댄스	1시간	주2회 이하	25,000원		체육관	검도	1시간	주5회 이하	30,000원	탁구	1시간	주5회 이하 (2,500원)	30,000원 (2,500원)	배드민턴	1시간	주5회 이하 (2,500원)	30,000원 (2,500원)	국선도	1시간	주5회 이하	30,000원	유아스포츠단	5시간	주5회 이하	90,000원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가.~나. (생략)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이용시간</th> <th>이용회수</th> <th>월이용료 (일회이용료)</th> <th></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수영장</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어린이</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아쿠아로빅</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어린이</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댄스스포츠</td> <td>----</td> <td>주3회 이하</td> <td>30,000원</td> <td></td> </tr> <tr> <td>요가</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발리댄스</td> <td>----</td> <td>주3회 이하</td> <td>30,000원</td> <td></td> </tr> <tr> <td rowspan="4">체육관</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삭제></td> <td><삭제></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국선도 태권도</td> <td>----</td> <td>----</td> <td>-----</td> </tr> <tr> <td><삭제></td> <td><삭제></td> <td><삭제></td> <td><삭제></td> <td></td> </tr> <tr> <td>노래교실</td> <td>2시간</td> <td>주2회 이하</td> <td>20,000원</td> <td></td> </tr> <tr> <td rowspan="2">기타</td> <td>생활체육</td> <td>1시간</td> <td>주3회 이하</td> <td>30,000원</td> </tr> <tr> <td>문화예술 교양취미</td> <td>2시간</td> <td>주2회 이하</td> <td>30,000원</td> </tr> <tr> <td colspan="5">가. 나. (현행과 같음) 다.종목이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기타 분야별 월 이용료를 적용한다.</td> </tr> </tbody> </table>					구분	이용시간	이용회수	월이용료 (일회이용료)		수영장	-----	----	-----	-----	-----	----	-----	-----	어린이	-----	-----	-----	아쿠아로빅	-----	----	-----	-----	-----	----	-----	-----	어린이	-----	-----	-----	-----	----	-----	-----		-----	----	-----	-----		댄스스포츠	----	주3회 이하	30,000원		요가	----	-----	-----		발리댄스	----	주3회 이하	30,000원		체육관	-----	----	-----	-----	-----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국선도 태권도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노래교실	2시간	주2회 이하	20,000원		기타	생활체육	1시간	주3회 이하	30,000원	문화예술 교양취미	2시간	주2회 이하	30,000원	가. 나. (현행과 같음) 다.종목이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기타 분야별 월 이용료를 적용한다.												
구분	이용시간	이용회수	월이용료 (일회이용료)																																																																																																																																																																																																								
수영장	-----	----	-----	-----																																																																																																																																																																																																							
	-----	----	-----	-----																																																																																																																																																																																																							
	어린이경노	-----	-----	-----																																																																																																																																																																																																							
아쿠아로빅	-----	----	-----	-----																																																																																																																																																																																																							
	-----	----	-----	-----																																																																																																																																																																																																							
	어린이경노	-----	-----	-----																																																																																																																																																																																																							
-----	----	-----	-----																																																																																																																																																																																																								
-----	----	-----	-----																																																																																																																																																																																																								
댄스스포츠	1시간	주2회 이하	25,000원																																																																																																																																																																																																								
요가	1시간	주5회 이하	25,000원																																																																																																																																																																																																								
발리댄스	1시간	주2회 이하	25,000원																																																																																																																																																																																																								
체육관	검도	1시간	주5회 이하	30,000원																																																																																																																																																																																																							
	탁구	1시간	주5회 이하 (2,500원)	30,000원 (2,500원)																																																																																																																																																																																																							
	배드민턴	1시간	주5회 이하 (2,500원)	30,000원 (2,500원)																																																																																																																																																																																																							
	국선도	1시간	주5회 이하	30,000원																																																																																																																																																																																																							
유아스포츠단	5시간	주5회 이하	90,000원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가.~나. (생략) <신설>																																																																																																																																																																																																											
구분	이용시간	이용회수	월이용료 (일회이용료)																																																																																																																																																																																																								
수영장	-----	----	-----	-----																																																																																																																																																																																																							
	-----	----	-----	-----																																																																																																																																																																																																							
	어린이	-----	-----	-----																																																																																																																																																																																																							
아쿠아로빅	-----	----	-----	-----																																																																																																																																																																																																							
	-----	----	-----	-----																																																																																																																																																																																																							
	어린이	-----	-----	-----																																																																																																																																																																																																							
-----	----	-----	-----																																																																																																																																																																																																								
-----	----	-----	-----																																																																																																																																																																																																								
댄스스포츠	----	주3회 이하	30,000원																																																																																																																																																																																																								
요가	----	-----	-----																																																																																																																																																																																																								
발리댄스	----	주3회 이하	30,000원																																																																																																																																																																																																								
체육관	-----	----	-----	-----																																																																																																																																																																																																							
	-----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국선도 태권도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노래교실	2시간	주2회 이하	20,000원																																																																																																																																																																																																								
기타	생활체육	1시간	주3회 이하	30,000원																																																																																																																																																																																																							
	문화예술 교양취미	2시간	주2회 이하	30,000원																																																																																																																																																																																																							
가. 나. (현행과 같음) 다.종목이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기타 분야별 월 이용료를 적용한다.																																																																																																																																																																																																											
<p><신설></p>					<p>5. 개인 사물함 사용료 : 보증금 10,000원, 월 사용료 3,000원</p>																																																																																																																																																																																																						



현행					개정안				
<p>[별표3] 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제8조제1항 관련] 1. ~ 2. (생략) 3.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p>					<p>[별표 3] 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제8조제1항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p>				
구	분	이용 시간	이용 회수	월 이용료 (일회이용료)	구	분	이용 시간	이용 회수	월 이용료 (일회이용료)
수 영 장	-----	-----	-----	-----	수 영 장	-----	-----	-----	-----
	-----	-----	-----	-----		어 린 이	-----	-----	-----
	어린이경노	-----	-----	-----			-----	-----	-----
아 쿠 아 로 빅	-----	-----	-----	-----	아 쿠 아 로 빅	-----	-----	-----	-----
	-----	-----	-----	-----		어 린 이	-----	-----	-----
	어린이경노	-----	-----	-----			-----	-----	-----
-----	-----	-----	-----	-----	-----	-----	-----	-----	-----
-----	-----	-----	-----	-----	-----	-----	-----	-----	-----
댄스스포츠	1시간	주2회 이하		22,000원	댄스스포츠	-----	-----	주3회 이하	25,000원
요 가	1시간	주5회 이하		22,000원	-----	-----	-----	-----	-----
발리댄스	1시간	주2회 이하		22,000원	발리댄스	-----	-----	주3회 이하	25,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설>					4. 개인 사물함 사용료 : 보증금 10,000원, 월 사용료 3,000원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별표 4] 국민생활관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 [제3조 관련]</p> <p>1. 본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운영시설</th> <th style="text-align: center;">프 로 그 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활체육 시설</td> <td>체육관, 수영장, 헬스실, 에어로빅실, 요가실, 검도실</td> <td>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요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발리댄스, 태보, 방송댄스, 라인댄스, 파워다이어트댄스, 힙합댄스, 재즈댄스, 나이트댄스, 살사댄스, 국선도, 태권도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문화예술 시설</td> <td>소극장</td> <td>연극, 행사, 노래교실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양취미 시설</td> <td>건강교실, 취미교실</td> <td>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난타, 가야금, 색소폰, 기타, 아코디언, 하모니카, 만도린, 오카리나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후생복지 시설</td> <td>매점, 휴게실</td> <td></td> </tr> </tbody> </table> <p>2. hamyeololimpicssportscenter</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운영시설</th> <th style="text-align: center;">프 로 그 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활체육 시설</td> <td>체육관, 수영장, 헬스실, 에어로빅실, 테니스장, 탁구장, 요가실, 다목적운동장, 로울러스케이트장</td> <td>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요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발리댄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농구, 배구, 풋살, 족구, 로울러스케이트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후생복지 시설</td> <td>매점, 휴게실, 식당</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운영시설	프 로 그 램	생활체육 시설	체육관, 수영장, 헬스실, 에어로빅실, 요가실, 검도실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요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발리댄스, 태보, 방송댄스, 라인댄스, 파워다이어트댄스, 힙합댄스, 재즈댄스, 나이트댄스, 살사댄스, 국선도, 태권도 등	문화예술 시설	소극장	연극, 행사, 노래교실 등	교양취미 시설	건강교실, 취미교실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난타, 가야금, 색소폰, 기타, 아코디언, 하모니카, 만도린, 오카리나 등	후생복지 시설	매점, 휴게실		구 분	운영시설	프 로 그 램	생활체육 시설	체육관, 수영장, 헬스실, 에어로빅실, 테니스장, 탁구장, 요가실, 다목적운동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요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발리댄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농구, 배구, 풋살, 족구, 로울러스케이트 등	후생복지 시설	매점, 휴게실, 식당	
구 분	운영시설	프 로 그 램																								
생활체육 시설	체육관, 수영장, 헬스실, 에어로빅실, 요가실, 검도실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요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발리댄스, 태보, 방송댄스, 라인댄스, 파워다이어트댄스, 힙합댄스, 재즈댄스, 나이트댄스, 살사댄스, 국선도, 태권도 등																								
문화예술 시설	소극장	연극, 행사, 노래교실 등																								
교양취미 시설	건강교실, 취미교실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난타, 가야금, 색소폰, 기타, 아코디언, 하모니카, 만도린, 오카리나 등																								
후생복지 시설	매점, 휴게실																									
구 분	운영시설	프 로 그 램																								
생활체육 시설	체육관, 수영장, 헬스실, 에어로빅실, 테니스장, 탁구장, 요가실, 다목적운동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요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발리댄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농구, 배구, 풋살, 족구, 로울러스케이트 등																								
후생복지 시설	매점, 휴게실, 식당																									



익산시 조례 제1172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4호 중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 및 대수선[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5호 중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를 “심의결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소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건축공사비(「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건축공사비(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 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의 건축공사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건축공사금액)”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영 제15조제5항제14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5호”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대행 및 수수료”를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로 한다.

제36조제5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제2호 중 “법 제51조”를 “법 제60조”로 한다.

별표3 중 1호 바목 띄어야 할 거리란 의 “1미터이상”을 “1미터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으로 하고, 2호 바목 띄어야 할 거리란 의 “0.5미터이상”을 “0.5미터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1. ~ 3. (생 략)</p> <p>4.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u>건축에 관한사항</u>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현상설계당선작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5. ~ 6.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1. ~ 4. (생 략)</p> <p>5. <u>위원별 의견</u>, <u>심의결과</u> 및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p> <p>제10조(소위원회) ① (생 략)</p> <p>② <u>제8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준용한다.</u></p> <p>제14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p> <p>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해당 <u>건축공사비</u>(「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p>	<p>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u>건축 및 대수선[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답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사항.</u> -----.</p> <p>5. ~ 6.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심의결과</u> 및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p> <p>제10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소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14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건축공사비(<u>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u></p>

현 행	개 정 안
<p>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p> <p>③ ~ ④ (생략)</p>	<p>공 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의 건축공사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건축공사금액) -----</p> <p>-----.</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가설건축물)</p> <p>① ~ ② 생략</p> <p>③ 영 제15조제5항 제14호 규정의 “건축물” 이라 함은 “별표 2” 의 건축물을 말한다.</p>	<p>제16조(가설건축물)</p> <p>① ~ ② 생략</p> <p>③ 영 제15조제5항 제15호 -----</p> <p>-----.</p>
<p>제16조의2(설계도서의 작성)</p> <p>① 영 제18조제1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별표 2” 의 건축물중 관리사무실(주차장)·화원·기계보호시설·제품야적장을 말한다.</p> <p>② (생략)</p>	<p>제16조의2(설계도서의 작성)</p> <p><삭 제></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대행 및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규칙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에서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p>	<p>제17조(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① -----</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p> <p>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대상건축물</th> <th style="text-align: center;">띄어야 할 거리</th> </tr> </thead> <tbody> <tr> <td>가 ~ 마 (생 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 략)</td> </tr> <tr> <td>바. 기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td> <td style="text-align: center;"><u>1미터 이상</u></td> </tr> </tbody> </table>	대상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 마 (생 략)	(생 략)	바. 기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u>1미터 이상</u>	<p>[별표 3]</p> <p>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대상건축물</th> <th style="text-align: center;">띄어야 할 거리</th> </tr> </thead> <tbody> <tr> <td>가 ~ 마 (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바.----- ----- ----- -----</td> <td style="text-align: center;"><u>1미터 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u></td> </tr> </tbody> </table>	대상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 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 ----- -----	<u>1미터 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u>
대상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 마 (생 략)	(생 략)												
바. 기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u>1미터 이상</u>												
대상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 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 ----- -----	<u>1미터 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u>												
<p>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대상건축물</th> <th style="text-align: center;">띄어야 할 거리</th> </tr> </thead> <tbody> <tr> <td>가 ~ 마 (생 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 략)</td> </tr> <tr> <td>바. 기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td> <td style="text-align: center;"><u>0.5미터 이상</u></td> </tr> </tbody> </table>	대상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 마 (생 략)	(생 략)	바. 기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u>0.5미터 이상</u>	<p>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대상건축물</th> <th style="text-align: center;">띄어야 할 거리</th> </tr> </thead> <tbody> <tr> <td>가~마 (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바.----- ----- ----- -----</td> <td style="text-align: center;"><u>0.5미터 이상 (한옥의 경우 처마선)</u></td> </tr> </tbody> </table>	대상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 ----- -----	<u>0.5미터 이상 (한옥의 경우 처마선)</u>
대상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 마 (생 략)	(생 략)												
바. 기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u>0.5미터 이상</u>												
대상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 ----- -----	<u>0.5미터 이상 (한옥의 경우 처마선)</u>												

익산시 조례 제1173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시장이 사무를 민간에게 대행하게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p> <p>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②~⑥ (생략)</p>	<p>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p> <p>①----- ----- ----- ----- ----- 단, 시장이 사무를 민간에게 대행하게 할 때는 시의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②~⑥ (현행과 같음)</p>

익산시 조례 제1174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자본으로 1억원 이상 보조하는 사업은 보조사업 완료 후 발생되어지는 수익금을 보조사업자로부터 5년에 걸쳐 보조금 교부결정된 금액의 5%이상 10%이하 범위내의 금액을 반환받아 학교무료급식, 보육시설에 대한 아토피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에도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규칙 제540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합계란 본청 “627”을 “636”으로 하고, 사업소 “175”를 “166”으로 하며, 일반직 계란 본청 “516”을 “522”로 하고, 사업소 “112”를 “106”으로 하며, 일반직 5급 소계란 본청 “27”을 “28”로 하고, 사업소 “9”를 “8”로 하며, 일반직 5급 행정란 합계 및 본청 “5”를 각각 “6”으로 하고, 일반직 5급 행정·농업란 합계 “5”를 “4”로 하며, 사업소 “1”을 삭제하고, 일반직 5급 행정·시설란 합계 “17”을 “16”으로 하며, 사업소 “1”을 삭제하고, 일반직 5급 행정·시설·농업란 합계 “5”를 “6”으로 하며, 사업소 “1”을 신설하고, 일반직 6급 소계란 합계 “275”를 “278”로 하며, 본청 “142”를 “146”으로 하고, 사업소 “30”을 “29”로 하며, 일반직 6급 행정란 본청 “19”를 “20”으로 하고, 사업소 “2”를 “1”로 하며, 일반직 6급 행정란 다음에 일반직 6급 세무란 및 합계·본청 “1”을 각각 신설하고, 일반직 6급 공업란 합계 “6”을 “7”로 하

며, 사업소 “3”을 “4”로 하고, 일반직 6급 시설란 합계 “20”을 “21”로 하며, 본청 “18”을 “19”로 하고, 일반직 6급 행정·공업란 본청 “12”를 “13”으로 하며, 사업소 “9”를 “8”로 하고, 일반직 7급 소계란 합계 “327”을 “329”로 하며, 본청 “162”를 “167”로 하고, 사업소 “36”을 “33”으로 하며, 일반직 7급 행정란 본청 “77”을 “79”로 하고, 사업소 “12”를 “10”으로 하며, 일반직 7급 세무란 합계 “19”를 “20”으로 하고, 본청 “10”을 “11”로 하며, 일반직 7급 공업란 합계 “19”를 “18”로 하고, 사업소 “7”을 “6”으로 하며, 일반직 7급 사회복지란 합계 “23”을 “25”로 하고, 본청 “6”을 “8”로 하며, 일반직 8급 소계란 합계 “273”을 “277”로 하고, 본청 “131”을 “133”으로 하며, 보건소 “44”를 “45”로 하고, 사업소 “27”을 “28”로 하며, 일반직 8급 행정란 합계 “55”를 “57”로 하고, 본청 “36”을 “38”로 하며, 일반직 8급 사서란 합계 및 사업소 “2”를 각각 “3”으로 하고, 일반직 8급 의료기술란 합계 및 보건소 “8”을 각각 “9”로 하며, 일반직 8급 전산란 합계 및 본청 “3”을 각각 “4”로 하고, 일반직 8급 사회복지란 합계 “15”를 “16”으로 하며, 본청 “6”을 “7”로 하고, 일반직 8급 행정·시설란 합계 “8”을 “6”으로 하며, 본청 “5”를 “3”으로 하고, 일반직 9급 소계란 합계 “129”를 “120”으로 하며, 본청 “48”을 “42”로 하고, 보건소 “5”를 “4”로 하며, 사업소 “8”을 “6”으로 하고, 일반직 9급 세무란 합계 “12”를 “10”으로 하며, 본청 “6”을 “4”로 하고, 일반직 9급 사서란 합계 및 사업소 “2”를 각각 “1”로 하며, 일반직 9급 의료기술란을 삭제하고, 일반직 9급 보건란 본청 “1”을 “2”로 하며, 사업소 “1”을 삭제하고, 일반직 9급 시설란 합계 “17”을 “16”으로 하며, 본청 “10”을 “9”로 하고, 일반직 9급 전산란을 삭제하며, 일반직 9급 사회복지란 합계 “39”를 “36”으로 하고, 본청 “

12”를 “9”로 하며, 기능직 계란 본청 “104”를 “107”로 하고, 사업소 “58”을 “55”로 하며, 기능직 7급 소계란 합계 “33”을 “35”로 하고, 본청 “13”을 “16”으로 하며, 사업소 “12”를 “11”로 하고, 기능직 7급 사무란 합계 “12”를 “14”로 하며, 본청 “4”를 “7”로 하고, 사업소 “3”을 “2”로 하며, 기능직 7급 조무란 합계 “4”를 “5”로 하고, 본청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7급 전화상담란을 삭제하고, 기능직 8급 소계란 합계 “44”를 “45”로 하며, 사업소 “16”을 “17”로 하고, 기능직 8급 전기란 합계 “7”을 “8”로 하며, 사업소 “4”를 “5”로 하고, 기능직 9급 소계란 합계 “74”를 “75”로 하며, 사업소 “17”을 “18”로 하고, 기능직 9급 전화상담란을 삭제하며, 기능직 9급 기계란 합계 “10”을 “11”로 하고, 사업소 “7”을 “8”로 하며, 기능직 9급 조무란 합계 “8”을 “9”로 하고, 본청 “4”를 “5”로 하며, 기능직 10급 소계란 합계 “66”을 “62”로 하고, 사업소 “10”을 “6”으로 하며, 기능직 10급 전기란 합계 “5”를 “4”로 하고, 사업소 “2”를 “1”로 하며, 기능직 10급 기계란 합계 “7”을 “6”으로 하고, 본청 “1”을 “3”으로 하며, 사업소 “6”을 “3”으로 하고, 기능직 10급 사무란 합계 “30”을 “29”로 하며, 본청 “18”을 “17”로 하고, 기능직 10급 조무란 합계 “23”을 “22”로 하며, 본청 “11”을 “10”으로 하고, 별정직 7급 소계란 합계 “3”을 “2”로 하며, 본청 “2”를 “1”로 하고, 별정직 7급 비서요원란 합계 및 본청 “1”을 각각 삭제하며, 별정직 7급란 다음에 별정직 8급 소계란 및 합계·본청 “1”을 각각 신설하고, 별정직 8급 소계란 다음에 예산편성관리원란 및 합계·본청 “1”을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별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직급·직렬별		기관별		합계	본청	--	보건소	--	사업소	직급·직렬별		기관별		합계	본청	--	보건소	--	사업소										
		합계	본청									합계	본청																
합계		1,395	627				116		175	합계		--	636				--		166										
--										--																			
일반직 계		1,090	516				87		112	일반직 계		--	522				--		106										
--										--																			
5급	소계	76	27						9	5급	소계	--	28						8										
	행정	5	5								행정	6	6																
	--										--																		
	행정·농업	5							1		행정·농업	4							0										
	--										--																		
	행정·시설	17							1		행정·시설	16							0										
	행정·시설·농업	5							0		행정·시설·농업	6							1										
6급	소계	275	142						30	6급	소계	278	146						29										
	행정	39	19						2		행정	--	20						1										
	<신설>										세무	1	1																
	--										--																		
	공업	6							3		공업	7							4										
	--										--																		
	시설	20	18								시설	21	19																
--									--																				
행정·공업	21	12						9	행정·공업	--	13							8											

현						개 정 안							
[별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별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직급·직렬별	기관별	합	본	--	사	직급·직렬별	기관별	합	본	--	사		
	계	청	보	업	계		청	보	업				
7급	소 계	327	162			36	7급	소 계	329	167			33
	행정	144	77			12	행정	--	79				10
	세무	19	10				세무	20	11				
	--						--						
	공업	19				7	공업	18					6
	--						--						
	사회복지	23	6				사회복지	25	8				
8급	소 계	273	131		44	27	8급	소 계	277	133		45	28
	행정	55	36				행정	57	38				
	--						--						
	사서	2				2	사서	3					3
	--						--						
	의료기술	8			8		의료기술	9			9		
	--						--						
	전산	3	3				전산	4	4				
	사회복지	15	6				사회복지	16	7				
	--						--						
행정·시설	8	5				행정·시설	6	3					
9급	소 계	129	48		5	8	9급	소 계	120	42		4	6
	--						--						
	세무	12	6				세무	10	4				
	사서	2				2	사서	1					1
	--						--						
	의료기술	1			1		<삭제>						
보건	7	1			1	보건	--	2				0	

현							개							정							안						
[별표]														[별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합	본	--	보	--	사	기관별		합	본	--	보	--	사	기관별		합	본	--	보	--	사				
직급·직렬별		계	청		건		업	직급·직렬별		계	청		건		업	직급·직렬별		계	청		건		업				
9급	시설	17	10					9급	시설	16	9					9급	시설	16	9								
	전산	1	1						<삭제>								<삭제>										
	사회복지	39	12						사회복지	36	9						사회복지	36	9								
--								--								--											
기능직 계		224	104				58	기능직 계		--	107					기능직 계		--	107					55			
--								--								--											
7급	소 계	33	13				12	7급	소 계	35	16					7급	소 계	35	16					11			
	--								--								--										
	사무	12	4				3		사무	14	7						사무	14	7					2			
	조무	4	2						조무	5	3						조무	5	3								
	전화상담	1	1						<삭제>								<삭제>										
8급	소 계	44					16	8급	소 계	45						8급	소 계	45						17			
	전기	7					4		전기	8							전기	8						5			
9급	소 계	74	36				17	9급	소 계	75	--					9급	소 계	75	--					18			
	--								--								--										
	전화상담	1	1						<삭제>								<삭제>										
	--								--								--										
	기계	10					7		기계	11							기계	11						8			
	--								--								--										
	조무	8	4						조무	9	5						조무	9	5								

현행							개정안								
[별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별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 계	본 청	--	보 건 소	--	사 업 소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 계	본 청	--	보 건 소	--	사 업 소
10급	소 계	66	32				10	10급	소 계	62	--				6
	전기	5					2		전기	4					1
	기계	7	1				6		기계	6	3				3
	--								--						
	사무	30	18						사무	29	17				
	조무	23	11						조무	22	10				
별정직 계		31	4					별정직 계		--	--				
--								--							
7급	소 계	3	2					7급	소 계	2	1				
	--								--						
	비서요원	1	1						비서요원	0	0				
신설	<신설>							8급	소 계	1	1				
	<신설>								예산편성 관리원	1	1				

익산시 규칙 제541호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홍보관리요원의 임용자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홍보
관리요원란 다음에 예산편성관리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무구분 및 직위	상당 계급	임 용 자 격 기 준
홍보관리 요원	6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방송학,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법학, 정치학, 언론홍보학 ○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방송학,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법학, 정치학, 언론홍보학 ○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예산편성 관리원	8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학, 경영학, 회계학, 세무학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일반직 9급 또는 별정직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9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 1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령	개 정 안																																																																																										
<p>[별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직무구분 및 직위</th> <th style="width: 10%;">상당계급</th> <th style="width: 75%;">임 용 자 격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의 전문위원</td> <td>5급</td> <td>(생략)</td> </tr> <tr> <td rowspan="2">보건료원</td> <td>6급</td> <td>(생략)</td> </tr> <tr> <td>7급</td> <td>(생략)</td> </tr> <tr> <td>나관리원</td> <td>7급</td> <td>(생략)</td> </tr> <tr> <td>화생방요원</td> <td>7급</td> <td>(생략)</td> </tr> <tr> <td>보건위생감시원</td> <td>7급</td> <td>(생략)</td> </tr> <tr> <td rowspan="2">농기계교육교관</td> <td>6급</td> <td>(생략)</td> </tr> <tr> <td>7급</td> <td>(생략)</td> </tr> <tr> <td rowspan="2">정원관리요원</td> <td>6급</td> <td>(생략)</td> </tr> <tr> <td>7급</td> <td>(생략)</td> </tr> <tr> <td rowspan="2">문화재관리전문요원</td> <td>6급</td> <td>(생략)</td> </tr> <tr> <td>7급</td> <td>(생략)</td> </tr> <tr> <td rowspan="2">홍보관리요원</td> <td>6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방송학,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법학, 정치학, 언론홍보학 ○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td> </tr> <tr> <td>7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방송학,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법학, 정치학, 언론홍보학 ○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td> </tr> <tr> <td><신 설></td> <td><신 설></td> <td><신 설></td> </tr> <tr> <td></td> <td><신 설></td> <td><신 설></td> </tr> </tbody> </table>	직무구분 및 직위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기 준	의 전문위원	5급	(생략)	보건료원	6급	(생략)	7급	(생략)	나관리원	7급	(생략)	화생방요원	7급	(생략)	보건위생감시원	7급	(생략)	농기계교육교관	6급	(생략)	7급	(생략)	정원관리요원	6급	(생략)	7급	(생략)	문화재관리전문요원	6급	(생략)	7급	(생략)	홍보관리요원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방송학,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법학, 정치학, 언론홍보학 ○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방송학,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법학, 정치학, 언론홍보학 ○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p>[별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직무구분 및 직위</th> <th style="width: 10%;">상당계급</th> <th style="width: 75%;">임 용 자 격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의 전문위원</td> <td>----</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 rowspan="2">보건료원</td> <td>----</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나관리원</td> <td>----</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화생방요원</td> <td>----</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보건위생감시원</td> <td>----</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 rowspan="2">농기계교육교관</td> <td>----</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 rowspan="2">정원관리요원</td> <td>----</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 rowspan="2">문화재관리전문요원</td> <td>----</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 rowspan="2">홍보관리요원</td>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 ○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td> </tr> <tr> <td>예산편성관리원</td> <td>8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학, 경영학, 회계학, 세무학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일반직 9급 또는 별정직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td> </tr> <tr> <td></td> <td>9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 1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td> </tr> </tbody> </table>	직무구분 및 직위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기 준	의 전문위원	----	(현행과 같음)	보건료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관리원	----	(현행과 같음)	화생방요원	----	(현행과 같음)	보건위생감시원	----	(현행과 같음)	농기계교육교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정원관리요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문화재관리전문요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홍보관리요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 ○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예산편성관리원	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학, 경영학, 회계학, 세무학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일반직 9급 또는 별정직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 1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무구분 및 직위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기 준																																																																																									
의 전문위원	5급	(생략)																																																																																									
보건료원	6급	(생략)																																																																																									
	7급	(생략)																																																																																									
나관리원	7급	(생략)																																																																																									
화생방요원	7급	(생략)																																																																																									
보건위생감시원	7급	(생략)																																																																																									
농기계교육교관	6급	(생략)																																																																																									
	7급	(생략)																																																																																									
정원관리요원	6급	(생략)																																																																																									
	7급	(생략)																																																																																									
문화재관리전문요원	6급	(생략)																																																																																									
	7급	(생략)																																																																																									
홍보관리요원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방송학,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법학, 정치학, 언론홍보학 ○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방송학,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법학, 정치학, 언론홍보학 ○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직무구분 및 직위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기 준																																																																																									
의 전문위원	----	(현행과 같음)																																																																																									
보건료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관리원	----	(현행과 같음)																																																																																									
화생방요원	----	(현행과 같음)																																																																																									
보건위생감시원	----	(현행과 같음)																																																																																									
농기계교육교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정원관리요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문화재관리전문요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홍보관리요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 ○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예산편성관리원	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학, 경영학, 회계학, 세무학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일반직 9급 또는 별정직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 1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익산시 규칙 제54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여성친화담당관) ① 여성친화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여성친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2. 여성정책 평가
3. 여성친화도시 정책개발
4.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조정
5. 성별영향평가 및 성 인지 교육
6. 여성친화도시 홍보
7. 여성친화 서포터즈 운영

제17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사회복지과장·여성친화정책과장” 을
“주민생활지원과장·사회복지과장·여성청소년과장” 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여성친화정책과)” 를 “(여성청소년과)”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여성친화정책과장” 을 “여성청소년
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여성주간 운영 및 여성정책 평가” 를 “여성주간
운영” 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지원협력과·사업지원과” 를 “사업지원과” 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13호까
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
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2.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지원
3. 국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
4. 식품산업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대내·외 교류협력사업 추진
6.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7. 홍보관 운영 및 각종 홍보물 제작
8.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
9. 식품클러스터 협력업체 유치
10. 식품전문 인력양성사업 추진

제42조제4항제23호(중전의 제13호) 중 “기술지원 업무” 를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지원” 으로 한다.

별표 1 사업소·출장소의 단(소)장의 직급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
지원단란 지원협력과장란을 삭제하고, 같은 란 사업지원과장 직급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여성친화정책과장” 을 “여성청소년과장” 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4조의2(여성친화담당관) ① 여성친화 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여성친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2. 여성정책 평가 3. 여성친화도시 정책개발 4.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조정 5. 성별영향평가 및 성 인지 교육 6. 여성친화도시 홍보 7. 여성친화 서포터즈 운영
<p>제17조(주민생활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주민생활지원 과장·사회복지과장·여성친화정책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 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체육진흥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 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17조(주민생활지원국) ----- ----- 주민생활지원 과장·사회복지과장·여성청소년과장----- ----- ----- ----- -----</p>
<p>제20조(여성친화정책과) 여성친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전반 2. ~ 6. (생략) 7.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p>제20조(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 <삭 제> 2. ~ 6. (현행과 같음) <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8. ~ 9. (생략)</p> <p>10. <u>여성주간 운영 및 여성정책 평가</u> 제42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의 단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지원협력과·사업지원과</u>를 둔다.</p> <p>② (생략)</p> <p>③ <u>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u> 2. <u>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지원</u> 3. <u>국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 지원</u> 4. <u>이전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간 통합시스템 구축</u> 5. <u>정부 및 도, 산학협력 체계 유지</u> 6. <u>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종합계획 수립</u> 7. <u>홍보관 및 각종 홍보물 제작</u> 8. <u>공공시설 및 유관기관 유치</u> 9. <u>식품클러스터 협력업체 유치</u> 10. <u>외국인·민간투자 유치 및 해외기업 유치</u> 11. <u>그 밖에 국책사업 추진 지원 전반</u> <p>④ <u>사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8. ~ 9. (현행과 같음)</p> <p>10. <u>여성주간 운영</u> 제42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① ----- ----- <u>사업지원과</u>-----.</p> <p>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④ -----.</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 12. (생략) 13. 그 밖에 기술지원 업무 전반				1.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2.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지원 3. 국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 지원 4. 식품산업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대내외 교류협력사업 추진 6.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7. 홍보관 운영 및 각종 홍보물 제작 8.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 9. 식품클러스터 협력업체 유치 10. 식품전문 인력양성사업 추진 11. ~ 22. (현행 제1호~제12호와 같음) 23. 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지원 전반			
[별표 1] 사업소·출장소의 단(소)장의 직급 (제40조 관련)				[별표 1] 사업소·출장소의 단(소)장의 직급 (제40조 관련)			
단 및 사업소명	단(소)장	과 장		단 및 사업소명	단(소)장	과 장	
		직 위	직 급			직 위	직 급
---				---			
국가식품 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 서기관	지원협력 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국가식품 클러스터 추진지원단	---	삭 제	
		사업지원 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사업지원 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익산시 규칙 제543호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을 “익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를 “「익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융자조건) 조례 제8조제5항과 관련하여 일반기업의 경우 자
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에서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3% 낮게 정하며, 익산시우수중소기업은 4% 낮게 정하며, 여성기
업은 5% 낮게 정한다.

다만, 기 지원업체는 위의 금리보다 1% 하향 보전한다.

제5조(시설자금 지원) ① 산업자금 중 시설자금은 여성기업 및 구조
고도화 추진 시 왕궁보석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 ② 당해연도 시설자금 지원 총액은 당해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총 지원규모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시설자금융자신청업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업체를 결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융자기간 연장)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융자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업체현황 (사업시작일자,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인증, 수상내용 등)

2. 사업내용

- 생산품 소개

- 생산과정 약술

- 제품판매 형태 및 규모

3. 산업자금 소요내역

- 사용용도 :

- 소요자금별 조달방법 :

4. 사업의 전망:

5. 상환계획:

6. 기타사항

○ 과거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용상황

년 도 별	자 금 명 칭	이 용 액	거 래 은 행	상 환 여 부

(별 표)

중소기업육성자금(시설자금지원)용자 평가표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종업원수 (10)	20인 이상	10		
	20인 미만 ~ 10인	8		
	10인 미만 ~ 5인	6		
	5인 미만	4		
연간매출액 (10)	20원억 이상	10		
	10억원 미만 ~ 10억원	8		
	10억원 미만 ~ 5억원	6		
	5억원 미만	4		
자산규모 (10)	20원억 이상	10		
	10억원 미만 ~ 10억원	8		
	10억원 미만 ~ 5억원	6		
	5억원 미만	4		
부채(10)	자본금액 100%이하	10		
	자본금액 150%이하	8		
	자본금액 150%초과	6		
사업현황 및 전망(10)	성장성(전년대비 자본증가)	유 무	5 3	
	생산성(전년대비 생산증가)	유 무	5 3	
	공장등록(5)	공장등록	유 무	5 3
		산업단지(15)	산업단지	유 무
기술 및 품질개발(20)	특허, 실용신안권, 의장등록획득(건당 2점씩)		10	
	기술개발 참여 및 품질경영업체(ISO, CCC, HACCP 등) (건당 2점씩)	10		
익산시 시책참여(10)	익산시 우수중소기업	6		
	장애인 기업	2		
	여성친화협약기업	2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u>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u>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u></p> <p>제1조(목적) ----- 「<u>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u>」-----</p> <p>-----</p> <p>-----</p> <p>제4조(융자조건) <u>조례 제8조제5항과 관련하여 일반기업의 경우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에서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3% 낮게 정하며, 익산시우수중소기업은 4% 낮게 정하며, 여성기업은 5% 낮게 정한다.</u></p> <p><u>다만, 기 지원업체는 위의 금리보다 1% 하향 보전한다.</u></p> <p>제5조(시설자금 지원) ①<u>산업자금 중 시설자금은 여성기업 및 구조고도화 추진시 왕궁보석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u></p> <p>② <u>당해연도 시설자금 지원 총액은 당해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총 지원규모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u></p> <p>③ <u>시장은 시설자금융자신청업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업체를 결정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2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업 계 획 서</p> <p>1. 사 업 개 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목 적 ○ 업 체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혁 • 규 모 「 부 지 : 평 연 건 평 : 평 └ 생 산 시 설 : <p>2. 업 체 소 개 (품 질 규 격 획 득 내 용 등)</p> <p>3. 사 업 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 산 제 품 소 개 ○ 생 산 과 정 약 술 ○ 제 품 판 매 형 태 및 규 모 	<p>[별지 제2호] (시행규칙 제2조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업 계 획 서</p> <p>1. 사 업 개 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체 현 황 (사 업 시 작 일 자, 상 호 변 경, 대 표 자 변 경, 인 증, 수 상 내 용 등) <p>2. 사 업 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 산 품 소 개 ○ 생 산 과 정 약 술 ○ 제 품 판 매 형 태 및 규 모 <p>3. 산 업 자 금 소 요 내 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용 용 도 : ○ 소 요 자 금 별 조 달 방 법 : <p>4. 사 업 의 전 망:</p> <p>5. 상 환 계 획:</p> <p>6. 기 타 사 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거 익 산 시 중 소 기 업 육 성 자 금 이 용 상 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년도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자금 명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이용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거래 은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상환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20px;"></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height: 20px;"></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height: 20px;"></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년도별	자금 명칭	이용액	거래 은행	상환 여부															
년도별	자금 명칭	이용액	거래 은행	상환 여부																	



현 행	개 정 안			
<u><신설></u>	[별 표]			
	중소기업육성자금(시설자금지원)용자 평가표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종업원수 (10)	20인이상		10	
	20인미만 10인		8	
	10인미만 ~ 5인		6	
	5인미만		4	
연간매출액 (10)	20억원이상		10	
	10억원미만 ~10억원		8	
	10억원미만 ~5억원		6	
	5억원 미만		4	
자산규모 (10)	20억원이상		10	
	10억원미만 ~10억원		8	
	10억원미만 ~5억원		6	
	5억원 미만		4	
부채(10)	자본금액 100%이하		10	
	자본금액 150%이하		8	
	자본금액 150%초과		6	
사업현황 및 전망(10)	성장성(전년대비 자본증가)	유	5	
		무	3	
	생산성(전년대비 생산증가)	유	5	
		무	3	
공장등록(5)	공장등록	유	5	
		무	3	
산업단지(15)	산업단지	유	15	
		무	10	
기술 및 품질개발(20)	특허, 실용신안권, 의장등록획득 (건당 2점씩)		10	
	기술개발 참여 및 품질경영업체 (ISO, CCC, HACCP 등) (건당 2점씩)		10	
익산시 시책참여(10)	익산시 우수중소기업		6	
	장애인 기업		2	
	여성친화협약기업		2	

익산시 훈령 제348호

익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별표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본청)중 감사담당관 다음란에 여성친화담당관란을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여성친화정책과”를 “여성청소년과”로 하며, 합계란 합계 “627”을 “636”으로 하고, 여성친화담당관 “6”을 신설하며, 기획예산과 “26”을 “28”로 하고, 회계과 “23”을 “24”로 하며, 행정지원과 “38”을 “43”으로 하고, 경영개발과 “16”을 “14”로 하며, 여성청소년과(종전의 여성친화정책과) “21”을 “18”로 하고, 환경위생과 “26”을 “27”로 하며, 청소과 “20”을 “17”로 하고, 교통행정과 “24”를 “26”으로 하며, 일반직 계란 합계 “516”을 “522”로 하고, 여성친화담당관 “6”을 신설하며, 기획예산과 “23”을 “24”로 하고, 회계과 “18”을 “19”로 하며, 행정지원과 “23”을 “25”로 하고, 경영개발과 “15”를 “13”으로 하며, 여성청소년과(종전의 여성친화정책과) “18”을 “15”로 하고, 환경위생과 “24”를 “25”로 하며, 재난안전과 “15”를 “16”으로 하고, 도로관리과 “17”을 “16”으로 하며, 일반직 5급 소계란 합계

“27”을 “28”로 하고, 여성친화담당관 “1”을 신설하며, 일반직 5급 행정란 합계 “5”를 “6”으로 하고, 여성친화담당관 “1”을 신설하며, 일반직 6급 소계란 합계 “142”를 “146”으로 하고, 여성친화담당관 “2”를 신설하며, 징수과 “5”를 “6”으로 하고, 행정지원과 “6”을 “8”로 하며, 여성청소년과 (종전의 여성친화정책과) “6”을 “4”로 하고, 도로관리과 “4”를 “5”로 하며, 일반직 6급 행정란 합계 “19”를 “20”으로 하고, 여성친화담당관 “1”을 신설하며, 일반직 6급 행정란 다음에 일반직 6급 세무란 및 합계·징수과 “1”을 각각 신설하고, 일반직 6급 시설란 합계 “18”을 “19”로 하며, 도로관리과 “1”을 “2”로 하고, 일반직 6급 행정·보건란 행정지원과 “1”을 신설하며, 여성청소년과 (종전의 여성친화정책과) “1”을 삭제하고,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란 여성친화담당관 “1”을 신설하며, 여성청소년과(종전의 여성친화정책과) “3”을 “2”로 하고, 일반직 6급 행정·공업란 합계 “12”를 “13”으로 하며, 행정지원과 “1”을 신설하고, 일반직 7급 소계란 합계 “162”를 “167”로 하며, 여성친화담당관 “1”을 신설하고, 기획예산과 “8”을 “9”로 하며, 징수과 “6”을 “7”로 하고, 여성청소년과(종전의 여성친화정책과) “5”를 “7”로 하며, 일반직 7급 행정란 합계 “77”을 “79”로 하고, 여성친화담당관 “1”을 신설하며, 기획예산과 “7”을 “8”로 하고, 일반직 7급 세무란 합계 “10”을 “11”로 하며, 징수과 “5”를 “6”으로 하고, 일반직 7급 사회복지란 합계 “6”을 “8”로 하며, 여성청소년과(종전의 여성친화정책과) “1”을 “3”으로 하고, 일반직 8급 소계란 합계 “131”을 “133”으로 하며, 여성친화담당관 “2”를 신설하고, 기획예산과 “6”을 “7”로 하며, 경영개발과 “5”를 “3”으로

하고, 여성청소년과(종전의 여성친화정책과) “1”을 “2”로 하며, 재난안전과 “1”을 “2”로 하고, 도로관리과 “6”을 “5”로 하며, 일반직 8급 행정란 합계 “36”을 “38”로 하고, 여성친화담당관 및 여성청소년과(종전의 여성친화정책과) “1”을 각각 신설하며, 일반직 8급 시설란 재난안전과 “1”을 신설하고, 도로관리과 “5”를 “4”로 하며, 일반직 8급 전산란 합계 “3”을 “4”로 하고, 기획예산과 “1”을 신설하며, 일반직 8급 사회복지란 합계 “6”을 “7”로 하고, 여성청소년과(종전의 여성친화정책과) “1”을 신설하며, 일반직 8급 행정·시설란 합계 “5”를 “3”으로 하고, 여성친화담당관 “1”을 신설하며, 경영개발과 “2”를 삭제하고, 여성청소년과(종전의 여성친화 정책과) “1”을 삭제하며, 일반직 9급 소계란 합계 “48”을 “42”로 하고, 기획예산과 “1”을 삭제하며, 징수과 “4”를 “2”로 하고, 회계과 “1”을 “2”로 하며, 여성청소년과 “5”를 “1”로 하고, 환경위생과 “1”을 신설하며, 도로관리과 “2”를 “1”로 하고, 일반직 9급 행정란 회계과 “1”을 신설하며, 여성청소년과(종전의 여성친화정책과) “1”을 삭제하고, 일반직 9급 세무란 합계 “6”을 “4”로 하며, 징수과 “3”을 “1”로 하고, 일반직 9급 보건란 합계 “1”을 “2”로 하며, 환경위생과 “1”을 신설하고, 일반직 9급 시설란 합계 “10”을 “9”로 하며, 도로관리과 “1”을 삭제하고, 일반직 9급 전산란을 삭제하며, 일반직 9급 사회복지란 합계 “12”를 “9”로 하고, 여성청소년과 (종전의 여성친화정책과) “4”를 “1”로 하며, 기능직 계란 합계 “104”를 “107”로 하고, 행정지원과 “11”을 “15”로 하며, 청소과 “7”을 “4”로 하고, 재난안전과 “5”를 “4”로 하며, 교통행정과 “10”을 “12”로 하고, 도로관리과 “9”를 “10”으로

하며, 기능직 7급 소계란 합계 “13”을 “16”으로 하고, 행정지원과 “2”를 “5”로 하며, 기능직 7급 사무란 합계 “4”를 “7”로 하고, 행정지원과 “3”을 신설하며, 기능직 7급 조무란 합계 “2”를 “3”으로 하고, 행정지원과 “1”을 신설하며, 기능직 7급 전화상담란을 삭제하고, 기능직 9급 소계란 행정지원과 “3”을 “6”으로 하며, 청소과 “5”를 “2”로 하고, 기능직 9급 전화상담란을 삭제하며, 기능직 9급 운전란 행정지원과 “1”을 “4”로 하고, 청소과 “5”를 “2”로 하며, 기능직 9급 조무란 합계 “4”를 “5”로 하고, 행정지원과 “1”을 “2”로 하며, 기능직 10급 소계란 행정지원과 “6”을 “4”로 하고, 재난안전과 “2”를 “1”로 하며, 교통행정과 “3”을 “5”로 하고, 도로관리과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10급 기계란 합계 “1”을 “3”으로 하고, 교통행정과 “2”를 신설하며, 기능직 10급 사무란 합계 “18”을 “17”로 하고, 행정지원과 “3”을 “2”로 하며, 기능직 10급 조무란 합계 “11”을 “10”으로 하고, 행정지원과 “3”을 “2”로 하며, 재난안전과 “2”를 “1”로 하고, 도로관리과 “1”을 신설하며, 별정직 계란 기획예산과 “1”을 신설하고, 행정지원과 “2”를 “1”로 하며, 별정직 7급 소계란 합계 “2”를 “1”로 하고, 행정지원과 “1”을 삭제하며, 별정직 7급 비서요원란 합계 및 행정지원과 “1”을 각각 삭제하고, 별정직 7급란 다음에 별정직 8급란 및 소계·합계·기획예산과 “1”을 각각 신설하며, 별정직 8급 소계란 다음에 별정직 8급 예산편성관리원란 및 합계·기획예산과 “1”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직속기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사업소)중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 지원단란

지원협력과란을 삭제하고, 합계란 합계 “175”를 “166”으로 하며, 사업지원과 “8”을 “13”으로 하고, 국민생활관 “14”를 “10”으로 하며, 일반직 계란 합계 “112”를 “106”으로 하고, 상수관리과 “20”을 “21”로 하며, 사업지원과 “8”을 “13”으로 하고, 국민생활관 “9”를 “7”로 하며, 일반직 4급 소계란 사업지원과 “1”을 신설하고, 일반직 4급 행정·기술란 사업지원과 “1”을 신설하며, 일반직 5급 소계란 합계 “9”를 “8”로 하고, 일반직 5급 행정·시설란 및 일반직 5급 행정·농업란을 각각 삭제하며, 일반직 5급 시설·공업란 다음에 일반직 5급 행정·시설·농업란 및 합계·사업지원과 “1”을 각각 신설하고, 일반직 6급 소계란 합계 “30”을 “29”로 하며, 상수관리과 “6”을 “7”로 하고, 사업지원과 “2”를 “3”으로 하며, 국민생활관 “3”을 “2”로 하고, 일반직 6급 행정란 합계 “2”를 “1”로 하며, 일반직 6급 공업란 합계 “3”을 “4”로 하고, 상수관리과 “2”를 “3”으로 하며, 일반직 6급 행정·시설란 사업지원과 “1”을 신설하고, 일반직 6급 행정·공업란 합계 “9”를 “8”로 하며, 국민생활관 “3”을 “2”로 하고, 일반직 7급 소계란 합계 “36”을 “33”으로 하며, 상수관리과 “7”을 “6”으로 하고, 사업지원과 “3”을 “4”로 하며, 일반직 7급 행정란 합계 “12”를 “10”으로 하고, 일반직 7급 공업란 합계 “7”을 “6”으로 하며, 상수관리과 “3”을 “2”로 하고, 일반직 7급 행정·농업란 사업지원과 “1”을 신설하며, 일반직 8급 소계란 합계 “27”을 “28”로 하고, 상수관리과 “4”를 “5”로 하며, 사업지원과 “2”를 “4”로 하고, 시립도서관 “4”를 “5”로 하며, 일반직 8급 행정란 상수관리과 “1”을 신설하고, 일반직 8급 사서란 합계 및 시립도서관 “2”를

각각 “3”으로 하며, 일반직 8급 행정·시설란 사업지원과 “1”을 신설하고, 일반직 8급 행정·전산란 사업지원과 “1”을 신설하며, 일반직 9급 소계란 합계 “8”을 “6”으로 하고, 국민생활관 “2”를 “1”로 하며, 시립도서관 “4”를 “3”으로 하고, 일반직 9급 사서란 합계 및 시립도서관 “2”를 각각 “1”로 하며, 일반직 9급 보건란을 삭제하고, 기능직 계란 합계 “58”을 “55”로 하며, 상수관리과 “23”을 “22”로 하고, 국민생활관 “5”를 “3”으로 하며, 기능직 7급 소계란 합계 “12”를 “11”로 하고, 국민생활관 “1”을 삭제하며, 기능직 7급 사무란 합계 “3”을 “2”로 하고, 국민생활관 “1”을 삭제하며, 기능직 8급 소계란 합계 “16”을 “17”로 하고, 상수관리과 “7”을 “8”로 하며, 기능직 8급 전기란 합계 “4”를 “5”로 하고, 상수관리과 “3”을 “4”로 하며, 기능직 9급 소계란 합계 “17”을 “18”로 하고, 상수관리과 “7”을 “8”로 하며, 기능직 9급 기계란 합계 “7”을 “8”로 하고, 상수관리과 “3”을 “4”로 하며, 기능직 10급 소계란 합계 “10”을 “6”으로 하고, 상수관리과 “3” 및 국민생활관 “1”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10급 전기란 합계 “2”를 “1”로 하고, 상수관리과 “1”을 삭제하며, 기능직 10급 기계란 합계 “6”을 “3”으로 하고, 상수관리과 “2” 및 국민생활관 “1”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직속기관) (제2조제3항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합계	보건 지원과	보건 사업과	합계	농산과	농산 유통과	농촌 지원과	연구 개발과	축산과
합 계		116	94	22	94	22	18	25	17	12
일반직 계		87	67	20	41	17	13	1		10
4급	소계	1	1							
	기술	1	1							
5급	소계	3	2	1	4	1	1	1		1
	의무	1	1							
	행정·농업				1					1
	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2	1	1			
	행정·간호·보건	1	1							
	의무·보건·간호	1		1						
6급	소계	11	6	5	11	4	4			3
	농업				1	1				
	간호	2	1	1						
	의료기술	1		1						
	행정·농업				7		4			3
	농업·시설				1	1				
	농업·수의				1	1				
	행정·시설·농업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간호·보건·의료기술	7	4	3							

직급·직렬별		기관별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합계	보건 지원과	보건 사업과	합계	농산과	농산 유통과	농촌 지원과	연구 개발과
7급	소계	23	19	4	13	6	4			3
	행정	1	1		3	3				
	농업				2	1	1			
	수의				1					1
	시설				2	2				
	간호	7	5	2						
	의료기술	3	2	1						
	보건	12	11	1						
	행정·농업				3		3			
	농업·수의				2					2
8급	소계	45	35	10	9	6	2			1
	행정				2	2				
	공업				1		1			
	농업				2	1				1
	환경				1		1			
	시설				1	1				
	간호	5	4	1						
	보건	14	12	2						
	의료기술	9	5	4						
	행정·농업				1	1				
	해양수산·농업				1	1				
	간호·보건	10	7	3						
	의료기술·보건	7	7							

직급·직렬별		기관별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합계	보건 지원 과	보건 사업 과	합계	농산 과	농산 유통 과	농촌 지원 과	연구 개발 과	축산 과
9급	소계		4	4		4		2			2
	행정					1		1			
	보건		4	4		1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					1
연구직 계						2				2	
연 구 사	소계					2				2	
	농업연구					1				1	
	농업·수의연구					1				1	
지도직 계						41	3	4	19	14	1
지 도 관	소계					2	1			1	
	농촌지도					2	1			1	
지 도 사	소계					39	2	4	19	13	1
	농촌지도					39	2	4	19	13	1
기능직 계			5	3	2	8	2	1	3	1	1
7급	소계		1	1		1	1				
	사무					1	1				
	운전		1	1							
8급	소계					1				1	
	농림					1				1	
9급	소계		2	1	1	4	1		3		
	운전		2	1	1	2	1		1		
	사무					2			2		

직급·직렬별		기관별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합계	보건 지원 과	보건 사업 과	합계	농산 과	농산 유통 과	농촌 지원 과	연구 개발 과
10급	소계	2	1	1	2		1			1
	전기				1		1			
	보건	1	1							
	사무	1		1	1					1
별정직 계		24	24		2			2		
6급	소계				1			1		
	농기계교관요원				1			1		
6-7 급	소계	24	24							
	보건진료원	24	24							
7급	소계				1			1		
	농기계교관요원				1			1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개													정													안												
[별표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본청) (제2조제1항관련)													[별표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본청) (제2조제1항관련)																																						
직급·직렬별	기관별	합계	감사 담당관	<신설>	기획 예산과	징수 과	회계 과	행정 지원과	경영 개발과	여성친화 정책과	환경 위생과	청소 과	재난 안전과	교통 행정과	도로 관리과	직급·직렬별	기관별	합계	감사 담당관	여성친화 담당관	기획 예산과	징수 과	회계 과	행정 지원과	경영 개발과	여성친화 소년과	환경 위생과	청소 과	재난 안전과	교통 행정과	도로 관리과																				
																																일반직 계	5급	6급	행정·보건	행정·사회복지	일반직 계	5급	6급	행정·보건	행정·사회복지										
합계		627		0	26	23	23	38	16	21	26	20	20	24	26	합계		636		6	28	--	24	43	14	18	27	17	--	26	--																				
--																--																																			
일반직 계		516		0	23	23	18	23	15	18	24	13	15	14	17	일반직 계		522		6	24	--	19	25	13	15	25	--	16	--	16																				
--																--																																			
5급	소계	27		0												5급		28		1																															
	행정	5		0													6		1																																
6급	소계	142		0	5		6		6					4	6급		146		2		6	8		4						5																					
	행정	19		0													20		1																																
	<신설>																				1																														
	--																																																		
	시설	18													1																2																				
	--																																																		
	행정·보건	3						0		1														1		0																									
행정·사회복지	10			0					3											1					2																										

현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감사 담당관	<신 설> 기 획 예 산 과	징 수 과	회 계 과	행 정 지 원 과	경 영 개 발 과	여 성 친 화 장 래 과	환 경 위 생 과	청 소 과	재 난 안 전 과	교 통 행 정 과	도 로 관 리 과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감사 담당관	여 성 친 화 장 래 과	기 획 예 산 과	징 수 과	회 계 과	행 정 지 원 과	경 영 개 발 과	여 성 친 화 장 래 과	환 경 위 생 과	청 소 과	재 난 안 전 과	교 통 행 정 과	도 로 관 리 과					
																													행정·공업	행정	세무	사회복지	행정·공업
행정·공업	12					0								행정·공업	13							1											
7급 소계	162		0	8	6			5						7급 소계	167		1	9	7				7										
행정	77		0	7										행정	79		1	8															
세무	10				5									세무	11				6														
--														--																			
사회복지	6							1						사회복지	8								3										
8급 소계	131		0	6			5	1			1	6	8급 소계	133		2	7				3	2			2			5					
행정	36		0					0					행정	38		1					1												
--													--																				
시설	38										0	5	시설	--												1		4					
전산	3			0									전산	4			1																
사회복지	6							0					사회복지	7								1											
행정·시설	5		0				2	1					행정·시설	3		1					0	0											
9급 소계	48			1	4	1		5	0			2	9급 소계	42			0	2	2			1	1									1	
행정	14					0		1					행정	--						1		0											
세무	6				3								세무	4				1															
--													--																				
보건	1								0				보건	2												1							

현													개 정 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감사 담당관 <신설>	기획 예산과	징수 과	회계 과	행정 지원과	경영 개발과	여성 친화정책과	환경 위생과	청소 과	재난 안전과	교통 행정과	도로 관리과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감사 담당관 <신설>	여성 친화 담당관	기획 예산과	징수 과	회계 과	행정 지원과	경영 개발과	여성 친화 소년과	환경 위생과	청소 과	재난 안전과	교통 행정과	도로 관리과		
																															소계	비서요원
10급	소계	32					6					2	3	2	10급	소계	--													1	5	3
	--															--																
	기계	1											0			기계	3														2	
	사무	18					3									사무	17							2								
	조무	11					3					2	0			조무	10							2					1		1	
별정직 계		4		0		2								별정직 계		--			1		1											
--														--																		
7급	소계	2					1							7급	소계	1							0									
	비서요원	1					1								비서요원	0							0									
<신설>	<신설>													8급	소계	1			1													
	<신설>														예산편성관리 원	1			1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직속기관) (제2조제3항관련)				[별표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직속기관) (제2조제3항관련)										
직급·직렬별	기관별 합계	보건소	농업기술 센터	직급·직렬별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합계	보건 지원과	보건 사업과	합계	농산과	농산 유통과	농촌 지원과	연구 개발과	축산과	
합계	210	116	94	합계	116	94	22	94	22	18	25	17	12	
일반직 계	128	87	41	일반직 계	87	67	20	41	17	13	1		10	
4급	소계	1	1	4급	소계	1	1							
	기술	1	1		기술	1	1							
5급	소계	7	3	4	5급	소계	3	1	1	4	1	1	1	1
	의무	1	1			의무	1	1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				1				1
	농업·농촌지도관	1		1		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업 농촌지도관	2		2		행정·농업 농촌지도관				2	1	1		
	행정·간호·보건	1	1			행정·간호·보건	1	1						
	의무·보건·간호	1	1			의무·보건·간호	1		1					
6급	소계	22	11	11	6급	소계	11	6	5	11	4	4		3
	농업	1		1		농업				1	1			
	간호	2	2			간호	2	1	1					

현					개 정 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기관별 직급·직렬별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합계	보건 지원과	보건 사업과	합계	농산과	농산 유통과	농촌 지원과	연구 개발과	축산과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행정·농업	7		7		행정·농업				7		4					3	
	농업·시설	1		1		농업·시설				1	1							
	농업·수의	1		1		농업·수의				1	1							
	행정·시설·농업	1		1		행정·시설·농업				1	1							
	행정·보건·의료 기술	1	1			행정·보건·의료 기술	1	1										
	간호·보건·의료 기술	7	7			간호·보건·의료 기술	7	4	3									
7급	소계	36	23	13	7급	소계	23	19	4	13	6	4					3	
	행정	4	1	3		행정	1	1		3	3							
	농업	2		2		농업				2	1	1						
	수의	1		1		수의				1							1	
	시설	2		2		시설				2	2							
	간호	7	7			간호	7	5	2									
	의료기술	3	3			의료기술	3	2	1									
	보건	12	12			보건	12	11	1									
	행정·농업	3		3		행정·농업				3		3						

현				개 정 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보건소	농업기술 센터	기관별 직급·직렬별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합계	보건 지원과	보건 사업과	합계	농산과	농산 유통과	농촌 지원과	연구 개발과	축산과		
	농업·수의	2		2		농업·수의				2						2	
8급	소계	53	44	9	8급	소계	45	35	10	9	6	2				1	
	행정	2		2		행정				2	2						
	공업	1		1		공업				1		1					
	농업	2		2		농업				2	1						1
	환경	1		1		환경				1		1					
	시설	1		1		시설				1	1						
	간호	5	5			간호	5	4	1								
	보건	14	14			보건	14	12	2								
	의료기술	8	8			의료기술	9	5	4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				1	1						
	해양수산·농업	1		1		해양수산·농업				1	1						
	간호·보건	10	10			간호·보건	10	7	3								
의료기술·보건	7	7		의료기술·보건	7	7											
9급	소계	9	5	4	9급	소계	4	4		4		2				2	
	행정	1		1		행정				1		1					
	보건	5	4	1		보건	4	4		1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보건소	농업기술 센터	기관별 직급·직렬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합계	보건 지원과	보건 사업과	합계	농산과	농산 유통과	농촌 지원과	연구 개발과	축산과
	의료기술	1	1			<삭제>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				1					1
연구직 계		2		2	연구직 계					2				2	
연구 사	소계	2		2	연구 사	소계				2				2	
	농업연구	1		1		농업연구				1				1	
	농업·수의연구	1		1		농업·수의연구				1				1	
지도직 계		41		41	지도직 계					41	3	4	19	14	1
지도 관	소계	2		2	지도 관	소계				2	1			1	
	농촌지도	2		2		농촌지도				2	1			1	
지도 사	소계	39		39	지도 사	소계				39	2	4	19	13	1
	농촌지도	39		39		농촌지도				39	2	4	19	13	1
기능직 계		13	5	8	기능직 계		5	3	2	8	2	1	3	1	1
7급	소계	2	1	1	7급	소계	1	1		1	1				
	사무	1		1		사무				1	1				
	운전	1	1			운전	1	1							

농업기술센터
조직도

후의 / 2011년 7월 8일

현					행					개 정 안									
직급·직렬별		기관별	합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직급·직렬별		기관별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합계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합계	농산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연구개발과	축산과		
8급	소계		1		1	8급	소계				1				1				
	농림		1		1		농림				1				1				
9급	소계		6	2	4	9급	소계	2	1	1	4	1		3					
	운전		4	2	2		운전	2	1	1	2	1		1					
	사무		2		2		사무				2			2					
10급	소계		4	2	2	10급	소계	2	1	1	2		1			1			
	전기		1		1		전기				1		1						
	보건		1	1			보건	1	1										
	사무		2	1	1		사무	1		1	1					1			
별정직 계			26	24	2	별정직 계		24	24		2			2					
6급	소계		1		1	6급	소계				1			1					
	농기계교관요원		1		1		농기계교관요원				1			1					
6-7급	소계		24	24		6-7급	소계	24	24										
	보건진료원		24	24			보건진료원	24	24										
7급	소계		1		1	7급	소계				1			1					
	농기계교관요원		1		1		농기계교관요원				1			1					

농업기술센터

후의 / 2011년 7월 8일

현							개 정 안								
[별표 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사업소) (제2조제4항관련)							[별표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사업소) (제2조제4항관련)								
직급·직렬별	기관별 합계	상하수도 사업단		국가식품 클러스터 추진지원 단		국 민 생 활 관	시 립 도 서 관	직급·직렬별	기관별 합계	상하수도 사업단		국가식품 클러스터 추진지원 단		국 민 생 활 관	시 립 도 서 관
		상 수 관 리 과	--	지 원 협 력 과	사 업 지 원 과					상 수 관 리 과	--	<삭 제>	사 업 지 원 과		
합계	175	45		10	8	14	24	합계	166	--		13	10	--	
일반직 계	112	20		10	8	9	18	일반직 계	106	21		13	7	--	
4급	소계	2		1	0			4급	소계	--		1			
	행정·기술	2		1	0				행정·기술	--		1			
5급	소계	9		1				5급	소계	8					
	행정·시설	1			1				<삭제>						
	--								--						
	행정·농업	1		1					<삭제>						
	시설·공업								시설·공업						
	<신설>								행정·시설·농업	1		1			
6급	소계	30	6	2	2	3		6급	소계	29	7	3	2		
	행정	2		1					행정	1					
	--								--						
	공업	3	2						공업	4	3				
	--								--						
	행정·시설	6		1	0				행정·시설	--		1			
	--								--						
	행정·공업	9				3			행정·공업	8			2		
7급	소계	36	7	3	3			7급	소계	33	6	4			
	행정	12		2					행정	10					
	--								--						
	공업	7	3						공업	6	2				
	--								--						
	행정·농업	1		1	0				행정·농업	--		1			

현행							개정안										
[별표 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사업소) (제2조제4항관련)							[별표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사업소) (제2조제4항관련)										
직급·직렬별	기관별	합계	상하수도 사업단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직급·직렬별	기관별	합계	상하수도 사업단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상수관리과	--	지원협력과	사업지원과						<삭제>	사업지원과				
8급	소계	27	4		3	2		4	8급	소계	28	5		4		5	
	행정	4	0		1					행정	--	1					
	사서	2						2		사서	3					3	
	--									--							
	행정·시설	3			1	0				행정·시설	--				1		
	행정·전산	1			1	0				행정·전산	--				1		
9급	소계	8					2	4	9급	소계	6				1	3	
	--									--							
	사서	2						2		사서	1					1	
	--									--							
	보건	1					1			<삭제>							
--								--									
기능직 계		58	23				5		기능직 계	55	22				3		
--									--								
7급	소계	12					1		7급	소계	11				0		
	--									--							
	사무	3					1			사무	2				0		
8급	소계	16	7						8급	소계	17	8					
	전기	4	3							전기	5	4					
9급	소계	17	7						9급	소계	18	8					
	--									--							
	기계	7	3							기계	8	4					
10급	소계	10	3				1		10급	소계	6	0			0		
	전기	2	1							전기	1	0					
	기계	6	2				1			기계	3	0			0		



익산시 훈령 제349호

익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

별표 2 본청 각 과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 중 감사담당관 다음란에 여성친화담당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서 명	담 당 명	직 렬 및 직 급
여성친화담당관	(2) 여성정책, 여성친화	6급 공무원 중 적임자

부서명란“여성친화정책과”를“여성청소년과”로 하고, 여성청소년과(종전의 여성친화정책과) 담당명 “(5)”를 “(4)”로 하며, “여성친화담당”을 삭제한다.

별표 4 사업단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 중 지원협력과란을 삭제하고, 사업지원과란 담당명 “(2) 식품산업담당, 사업지원담당”을 “(3) 식품산업담당, 유치담당, 사업지원담당”으로 한다.

별표 5 사업소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 중 국민생활관란 담당명 “(3)”을 “(2)”로 하고, “관리담당”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익산시방화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방화대 편성표 중 구호조(조원)란 “여성친화정책과원”을 “여성청소년과원”으로 한다.

②「익산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여성친화정책과장”을 “여성친화담당관”으로 한다.

③「익산시성희롱예방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성친화정책과”를 “여성청소년과”로 하고, 제6조제1항·제3항, 제12조제3항 중 “여성친화정책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④ 「Foodpolis 홍보관 관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원협력과장”을 “사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본청 각 과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 (제4조 관련)			[별표 2] 본청 각과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 (제4조 관련)		
부서명	담 당 명	직렬 및 직급	부서명	담 당 명	직렬 및 직급
감사 담당관			감사 담당관		
<신설>			여성친화 담당관	(2) 여성정책담당, 여성친화 담당	6급 공무원 중 적임자
---			---		
여성친화 정 책 과	(5) 여성친화담당, 여성복지 담당, 보육담당, 아동청 소년담당, 여성회관담당	6급 공무원 중 적임자	여성 청소년과	(4) <삭제> ----- ----- -----	---
[별표 4] 사업단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 (제6조 관련)			[별표 4] 사업단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 (제6조 관련)		
부서명	담 당 명	직렬 및 직급	부서명	담 당 명	직렬 및 직급
지 원 협력과	(2) 지원담당, 유치담당	6급 공무원 중 적임자	<삭제>		
사 업 지원과	(2) 식품산업담당, 사업지원 담당	6급 공무원 중 적임자	사 업 지원과	(3) 식품산업담당, 유치담당, 사업지원담당	---
[별표 5] 사업소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 (제7조 관련)			[별표 5] 사업소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 (제7조 관련)		
부서명	담 당 명	직렬 및 직급	부서명	담 당 명	직렬 및 직급
국 민 생활관	(3) 관리담당, 운영담당, 함열시설담당	6급 공무원 중 적임자	국 민 생활관	(2) <삭제> -----	---

익산시 고시 제2011-52호

목천포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익산시 관내 지방하천인 목천포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목천포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 적 :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하천개수를 통하여 인근 지역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시민들의 생명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함
 - 나. 사 업 비 : 13,816백만원(국비 8,290, 지방비 5,526)
 - 다. 사업개요 : 하천정비 L=1.7km, 배수로정비 L=3.0km, 우수지조성 L=1.0km, 석탄1교재가설 1식, 신천·고잔배수펌프장설치
3. 시행지역의 위치

시 점	종 점	연 장	비 고
평화동 288-2번지	목천동 1358-4번지	1.7km	

4. 공사시행자의 성명 : 익산시장

주소 : 익산시 남중동 1가 60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09. 1. ~ 2011. 12. 31

6. 열람기간및장소 : 공고일부터 20일간 , 익산시청 재난안전과

7.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지장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조서 : 따로붙임

8. 실시설계 도서를 익산시청 재난안전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익산시청 재난안전과 복구지원계(☎063-859-5954)

토 지 조 서

◎ 목천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번호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 지번	공부 지목	실제 지목	당초 면적 (㎡)	편입 면적 (㎡)	지분	소유자명	소유자주소	비고
계			27필지				8,353.4				
1	익산시 목천동	1264-4	1264-4	전		106.0	106.0		이성정	익산시 갈산동 123	
2	익산시 목천동	1264-5	1264-5	전		212.0	212.0		이성정	익산시 갈산동 123	
3	익산시 목천동	1303-7	1303-7	답		69.0	69.0		채동량	김제시 백구면 삼정리 400	
4	익산시 평화동	297	297-1	구거		1,547.1	581.4		이군겸	익산시 평화동 298	
					답		242.0		이군겸	익산시 평화동 298	현황"답"
5	익산시 평화동	298	298-1	구거		833.1	32.1		이군겸	익산시 평화동 298	
					답		330.0		이군겸	익산시 평화동 298	현황"답"
6	익산시 평화동	308	308-1	구거		1,950.4	14.9	1/4	김광근	용산구 후암동 30-111	
								1/4	김광범	동작구 상도동 528 상도동 동원베네스트 104/302	
								1/4	김정신	구리시 인창동 487-32 아름마을일신@ 701/904	
								1/4	김정미	용산구 주성동 43-29 조이파크 401	

익산시
지부

후의 / 2011년 7월 8일

번호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 지번	공부 지목	실제 지목	당초 면적 (㎡)	편입 면적 (㎡)	지분	소유자명	소유자주소	비고
7	익산시 평화동	318-9	318-36	답		2,332.4	1,145.1		국(재정경제원)		
8	익산시 평화동	318-11	318-37	답		1,524.3	278.1		국(재정경제원)		
9	익산시 인화동2가	341	341-62	답		1,716.0	125.0		문미례	익산시 남중동 532-8	
10	익산시 인화동2가	341-1	341-63	답		1,190.0	65.0		문미례	익산시 남중동 532-8	
11	익산시 목천동	1264-3	1264-9	천		5,577.0	2,473.0		김준식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23	
					답		516.0		김준식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23	현황"답"
12	익산시 목천동	1266-1	1266-7	천		185.0	95.0		좌백승	익산군 이리읍 옥정 203	
					답		64.0		좌백승	익산군 이리읍 옥정 203	현황"답"
13	익산시 목천동	1275-2	1275-3	잡		724.0	20.0		김백술	익산시 어양동 606-1 쌍용@104-303	
14	익산시 목천동	1306-52	1306-232	전		1,845.0	223.0		김백술	익산시 어양동 606-1 쌍용@104-303	
15	익산시 목천동	1306-93	1306-237	전		258.0	110.0		김백술	익산시 어양동 606-1 쌍용@104-303	
16	익산시 목천동	1309-94	1309-238	전		615.0	157.0		김백술	익산시 어양동 606-1 쌍용@104-303	
17	익산시 목천동	1306-139	1306-239	답		1,327.0	387.0		최정희	익산시 목천동 1265-5	

번호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 지번	공부 지목	실제 지목	당초 면적 (㎡)	편입 면적 (㎡)	지분	소유자명	소유자주소	비고
18	익산시 목천동	1433-1	1433-13	답		4,175.0	10.0		한국철도시설공단	익산시 목천동 1300-4	
19	익산시 동산동	525-17	525-17	도		7	7		국(재정경제원)		
20	익산시 동산동	525-29	525-29	잡		209	209		국(재정경제원)		
21	익산시 동산동	525-30	525-30	천		114	114		국(재정경제원)		
22	익산시 목천동	1355-4	1355-21	답		440	62		국(재정경제부)		
23	익산시 목천동	1355-5	1355-22	답		1,053	3		김성록	익산시 목천동 1372-3	
24	익산시 평화동	318-29	318-50	답		476	64		국(재정경제부)		
25	익산시 평화동	318-5	318-48	답		619	307		국(재정경제부)		
26	익산시 평화동	318-3	318-47	답		855	263		국(재정경제부)		
27	익산시 평화동	318-1	318-46	답		635	69		국(재정경제부)		

지 장 물 조 서

◎ 목천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수량 · 면적	단위	소유자명	주 소	비고
계		8건						
1	익산시 목천동	1264-3	관정	1	식	김준식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23	
2	익산시 인화동2가	341-61	관정	2	식	이승룡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252	
3	익산시 인화동2가	214-4	관정	1	식	국(농림부)		
4	익산시 인화동2가	341-59	대추나무	1	주	익산시		
5	익산시 인화동2가	131-3	감나무	2	주			
			관정보호시설	1	식			
6	익산시 목천동	1355-14	관정	1	식	김성록	익산시 목천동 1372-3	
7	익산시 목천동	1394-6	대추나무	2	주			
8	익산시 목천동	358-3	매실나무	1	주			
			감나무	1	주			

익산시 고시 제2011-53호

고 시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익산시 주택과 및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 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1. 사 업 명 : 익산 부송동 하나리움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하나건설 대표 박안수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94-1번지)
3. 위 치 : 익산시 부송동 678번지의 24필지
4. 사업내용
 - 가. 대지면적 : 19,934㎡
 - 나. 건축면적 : 4,756.8528㎡
 - 다. 연 면 적 : 59,653.8375㎡
 - 라. 규 모 : 지하1층, 지상6층~18층, 주4/부4동, 396세대
 -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바. 사 업 비 : 90,840백만원
 - 사. 사업기간 : 2010. 10. ~ 2013. 3.
5.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시설
- 관리사무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등
6. 변경승인일자 : 2011.03.11.

7.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설계개요 면적산출근거	건축면적 : 4,710.0538 ·연 면 적 : 59,649.7775 m ²	·건축면적 : 4,756.8528m ² ·연 면 적 : 59,653.8375m ²	(중)46.799m ² (중)4.06m ² 101,104동 주출입구 변경
A형 단위세대 평면도	·주방 창호 : 1500× 1050 ·침실1 창호 : 5/PD, W=2000 ·발코니4 창호 : A3/E-PW, W=2000 ·침실3 창호 : A2/E-PW, W=2100 ·욕실2 창호 : 목 창호 중앙	·주방 창호 : 1200× 1250 및 위치 이동 ·침실1 창호 : 5/PD, W=2200 ·발코니4 창호 : A3/E-PW, W=2200 ·침실3 창호 : A2/E-PW, W=2000 ·욕실2 창호 : 목 창호 위치이동	인테리어 마감에 의한 변경
A1형 단위세대 평면도	·침실2 창호 : A13/E-PW, W=2100	·침실2 창호 : A13/E-PW, W=2000	
B형 단위세대 평면도	·주방 : AD/PD 부위 외단열 ·침실1 창호 : B5/PD, W=2200 ·발코니2 창호 : B2/E-PW, W=2200	·주방 : AD/PD 부위 내단열 ·침실1 창호 : B5/PD, W=2300 ·발코니2 창호 : B2/E-PW, W=2300	
B1형 단위세대 평면도	·주방 : AD/PD 부위 외단열 ·침실1 창호 : B14/PD, W=2200 ·발코니2 창호 : B12/E-PW, W=2200 ·1층 주출입구 : 케노피 쪽 W=3000	·주방 : AD/PD 부위 내단열 ·침실1 창호 : B14/PD, W=2300 ·발코니2 창호 : B12/E-PW, W=2300 ·1층 주출입구 : 케노피 쪽 W=7000	
C형 단위세대 평면도	·주방 창호 : 1800× 1050 ·침실1 창호 : C5/PD, W=2200 ·발코니3 창호 : C2/E-PW, W=2200	·주방 창호 : 1200× 1250 및 위치변경 ·침실1 창호 : C5/PD, W=2500 ·발코니3 창호 : C2/E-PW, W=2500	
입면도	·입면 문양	·입면 문양 변경	미관 향상
창호 슬라브 하부 턱	·전면 창호 슬라브 하부 턱	·전면 창호 슬라브 하부 턱 삭제	개방감 확보
창호 슬라브 하부 턱	·후면 E/V홀 창호 슬라브 하부 턱	·후면 E/V홀 창호 슬라브 하부 턱 삭제	개방감 확보
E/V PIT 층고	·E/V PIT 층고 : 1800	·E/V PIT 층고 : 2100	하자보수 용이
창호도	·1/AG 실외기실 창호 형태 ·확장형 전면 창호 : H=2050 ·확장형 후면 창호 : H=1050	·1/AG 실외기실 창호 형태 변경 ·확장형 전면 창호 : H=2250 ·확장형 후면 창호 : H=1250	개방감 확보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관리동	재활용품창고 천정 마감 : 표기없음	·재활용품 창고 천정 마감 : 경량철골 천정틀 위 지정품 텍스 마감	품질 향상
지하주차장	·주차장 외부 벽체 마감 : 액체방수+보호몰탈+수성페인트 ·주차장 지붕 방수 : 슈트 방수 ·주차장 내벽 액체방수	·주차장 외부 벽체 마감 : 벽체 배수판 ·주차장 지붕 방수 : 도막 방수 ·주차장 외벽 도막방수	품질 향상
A형 바닥구조도	·A형 단위세대 B1 위치 : 대피공간 발코니 내부에 위치	·A형 단위세대 B1 위치 : 대피공간 발코니 왼쪽 벽체쪽 으로 이동	천정보 노출 에 의한 변경
101동 A형 2층 바닥구조도	·주출입구 B5 설치	·주출입구 B5 삭제	건축단면과 상이하여 도면정정
	·101동 A형 응벽 부호 : AW8	·101동 A형 응벽 부호 : DW9P	표기 오류 정정
102,103동	·휨률 상부 보 : AWG11	·휨률 상부 보 : AWG12	휨률 급기 덕트 설치에 의한 변경
101동 벽체 배근도	·AW10 3~4층 수직근 : HD13@200 ·AW10P 1층 : HD13@100(수직근) HD10@250(수평근) ·DW9P B1층 표기없음	·AW10 3~4층 수직근 : HD13@150 ·AW10P 1층 : HD16@100(수직근) HD10@190(수평근) ·DW9P 지하1층 배근 표기	단위세대 날개응벽 변경에 의한 구조 변경
102,103동 벽체 배근도	·AW11 8~14층 수직근 : HD10@300 ·BW10 B1층~14층 수평근 : HD10@220	·AW11 8~14층 수직근 : HD10@200 ·BW10 B1층~14층 수평근 : HD10@200	
104동 벽체 배근도	·AW10P 4층 수평근 : HD10@300	·AW10P 4층 수평근 : HD10@250	
보배근 일람표	·B3 : 슬래브 하부턱 있음	·B3 : 슬래브 하부턱 삭제	건축변경에 의한 변경
근린생활시설	·2층 바닥구조도 슬래브 부호 : S1	·2층 바닥구조도 슬래브 부호 : S2	표기오류 정정
위생배관 평면도	·A,B,B1,C형 주방 환기 : AD 덕트로 배기	·A,B,B1,C형 주방 환기 : 세대 벽체로 D100 PVC관 설치	보수유지 편리
단위세대 환기유닛 평면도	·A,A1,B,B1,C형 환기유닛 환기설비 : 거실, 침실	·A,A1,B,B1,C형 환기유닛 환기설비 : 거실, 침실 위치 조정	위치 조정
단위세대 냉매 배관평면도	·A,A1,B,B1,C형 냉매 배관 평면도	·A,A1,B,B1,C형 냉매 배관 평면도 추가	도면 추가

8. 설계도서 : 승인 설계도서와 같음. 끝.



익산시 공고 제2011-1165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가.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신청마을 및 주변지역이 주변영향지역 300m이내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인근주민(행정동인 삼성동, 팔봉동)이 소외되어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20%를 감면하여 인근주민 화합에 기여하고

나. 사용료를 감면하며, 사용료 감면으로 주민편익 시설운영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지역 행정동인 삼성동, 팔봉동 거주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100분의20을 감면(안 제22조 제2항 신설)

나. 수탁자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안 제24조의2 운영지원 시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7월 28일까지 익산시장(참조 : 청소과장)에게 서면, 팩스(FAX), 익산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 조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서 보내주실 곳》

- ▶ 익산시 인북로 226-7(남중동)
- ▶ 익산시청 청소과(전화 : 859-5427, 팩스 : 859-5081)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지역(삼성동, 팔봉동) 거주주민에게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감면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4조의2(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사용료의 감면)① 생략</p> <p><u><신설></u></p> <p>② (생략)</p> <p>제23조 ~ 제24조(생략)</p> <p><u><신설></u></p>	<p>제22조(사용료의 감면)①(현행과 같음)</p> <p><u>②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지역(삼성동, 팔봉동) 거주주민에게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감면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u></p> <p><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p> <p>제23조 ~ 제24조(현행과 같음)</p> <p><u>제24조의2(운영지원)시장은 주민편의시설운영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익산시 공고 제2011-1166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인 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 관련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4. 주민편익시설사용료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 개인사물함

(단위: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기본료 (1인 1개월)	3,000	1개월 사용료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7월 28일 까지 익산시장(참조 :청소과장)에게 서면, 팩스(FAX), 익산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서 보내주실 곳》

- ▶ 익산시 인북로226-7번지(남중동)
- ▶ 익산시청 청소과(전화 : 859-5427, 팩스 : 859-5081)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 주민편익시설사용료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 개인사물함

(단위: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기본료 (1인 1개월)	3,000	1개월 사용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4](제23조와 관련)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1. ~ 5(생략)</p> <p><신설></p>	<p>[별표 4](제23조와 관련)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1. ~ 5(현행과 같음)</p> <p>6 <u>개인사물함 신설</u></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분</th> <th style="width: 30%;">사 용 료</th> <th style="width: 4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기본료 (1인 1개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u>3,000</u></td> <td>1개월 사용료</td> </tr> </tbody> </table>	구 분	사 용 료	비 고	기본료 (1인 1개월)	<u>3,000</u>	1개월 사용료
구 분	사 용 료	비 고					
기본료 (1인 1개월)	<u>3,000</u>	1개월 사용료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1-2호

전자이미지공인등록공고

익산시공인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익 산 시 장

- 다 음 -

○ 공인 등록 내역

구분	공인명	인영	서체	규격 (mm)	교부 사유	최 사 년 월	초 용 일	관수부서
등록	양곡관리특별회계 익산시분임수입징 수관인		한 글 전서체	20×20 정사각형	등록	2011.7.8		농산유통과